안전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중부권평가센터 이 우 찬 차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A 항목 : 운영체계(22문항/400점)

B 항목 : 업무성과(26문항/600점)

총 48문항, 1,000점

A항목 : 운영체계(22문항/400점)

A1 : 업무관리체계(50점)
A2 : 인력(210점)
A3 : 장비(80점)
A4 : 사업장관리(60점)(-10~+10점)
A5 : 포상 및 행정처분(-80~+10점)
A6 : 종합화(+10점)

B항목 : 업무성과(26문항/600점)

B1 : 기술지도의 충실성(480점)
현장모니터링(-30점)

B2 : 재해감소(70점)

B3 : 만족도 및 우수사례(50점)

B4 :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200~+100점)

-A항목-

운영체계

(사업계획/인력/시설·장비/업무표준)

A.1.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배점: 30) 평균득점: 20.5점	
평가항목 A.1.1	평가기준 (배점: 30, 감점: -5)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①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양호하고 정기적인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 30
	②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양호하나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 20
	③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경우	□ 10
	④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연간 운영방침 및 수탁사업장 관리 등 사업계획 수립/평가/기록 및 유지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보건관리를 통한 현장의 보건관리 내실화 향상 및 개선 활동 제고

평가방법

○ 기관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평가

○ 수립된 계획이 이행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통한 보완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하는지 여부 평가

+ 판단기준

□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계획]**

○❶**운영방침**, ❷목표관리(업무상질병 감소, 질식재해 감소 등), ❸**인력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분야) 운영계획**, ❹수탁사업장 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위4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내용이 적정하면 "양호", **일부라도 누락**되거나작성내용이적정하지 않으면 **"미흡"**

[자체평가 및 보완 등 개선노력]

○ 정기적인 ❶자체평가 및 ❷보완(개선) 사항 반영 **결과물 등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A.1.1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계획(배점 : 30점, 감점 : -5점)> 평균점수(100점 환산) : `20년 66.7점 → `22년 68.3점

운영방침 및 연간 사업계획

- 없음 → 0점
- 미흡 → 10점

<내용의 충실도> 양호 ↓

정기 자체평가

- 미흡 → 20점

<연 1회 이상> 실시 ↓

평가결과 보완 (개선) 노력

<사업반영 등> 적정 ↓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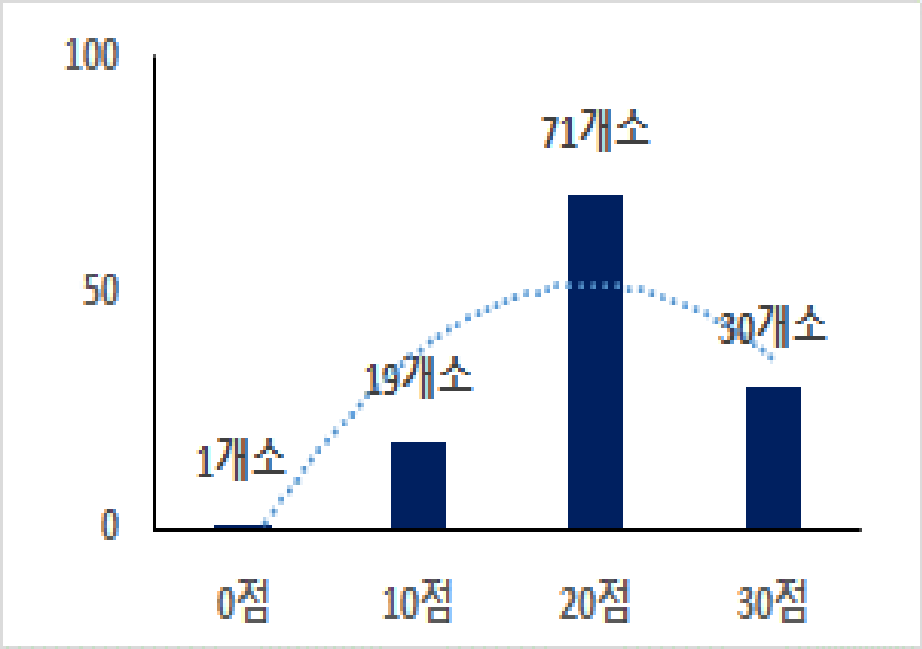

A.1.2	업무관리체계 (배점: 20) 평균득점: 16.4점	
평가항목 A.1.2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가결과
업무관리체계 (업무분장)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고, 보건관리 수탁 업무 관련 보고서(서류)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	□ 20
	②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적정하나, 보건관리 수탁 업무 관련 보고서(서류)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미흡한 경우	□ 10
	③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미흡하거나, 보건관리 수탁업무 관련 보고서(서류)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미흡한 경우	□ 5
	④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기관의 조직 및 업무분장, 문서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수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 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

평가방법

기관의 **조직도**, **업무분장**, 문서관리, 권한과 임무, 수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체계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문서화** 및 **실질적인 실행여부**를 평가

+ 판단기준

○조직도 및 업무분장은 업무 **총괄책임자, 책임구역 또는 사업장을 명확히** 하고, 대행요원별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장비 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별 업무분장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 인력 변경 시 수행인력 **변경등록일 기준 30일**(ex) 10월 7일 → 11월 6일)이내 **업무 분장을 최신화**

○**보건관리상태보고서** 및 **사업장 관리카드** 등 수탁업무 관련 보고서(서류)가 문서화된 업무 분장에 따라 명확히 작성되고, **관리자의 검토 및 결재**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A.1.2 업무관리체계(업무분장)(배점 : 20점, 감점 : -5점)>

평균점수 : `20년 79.0점 → `22년 8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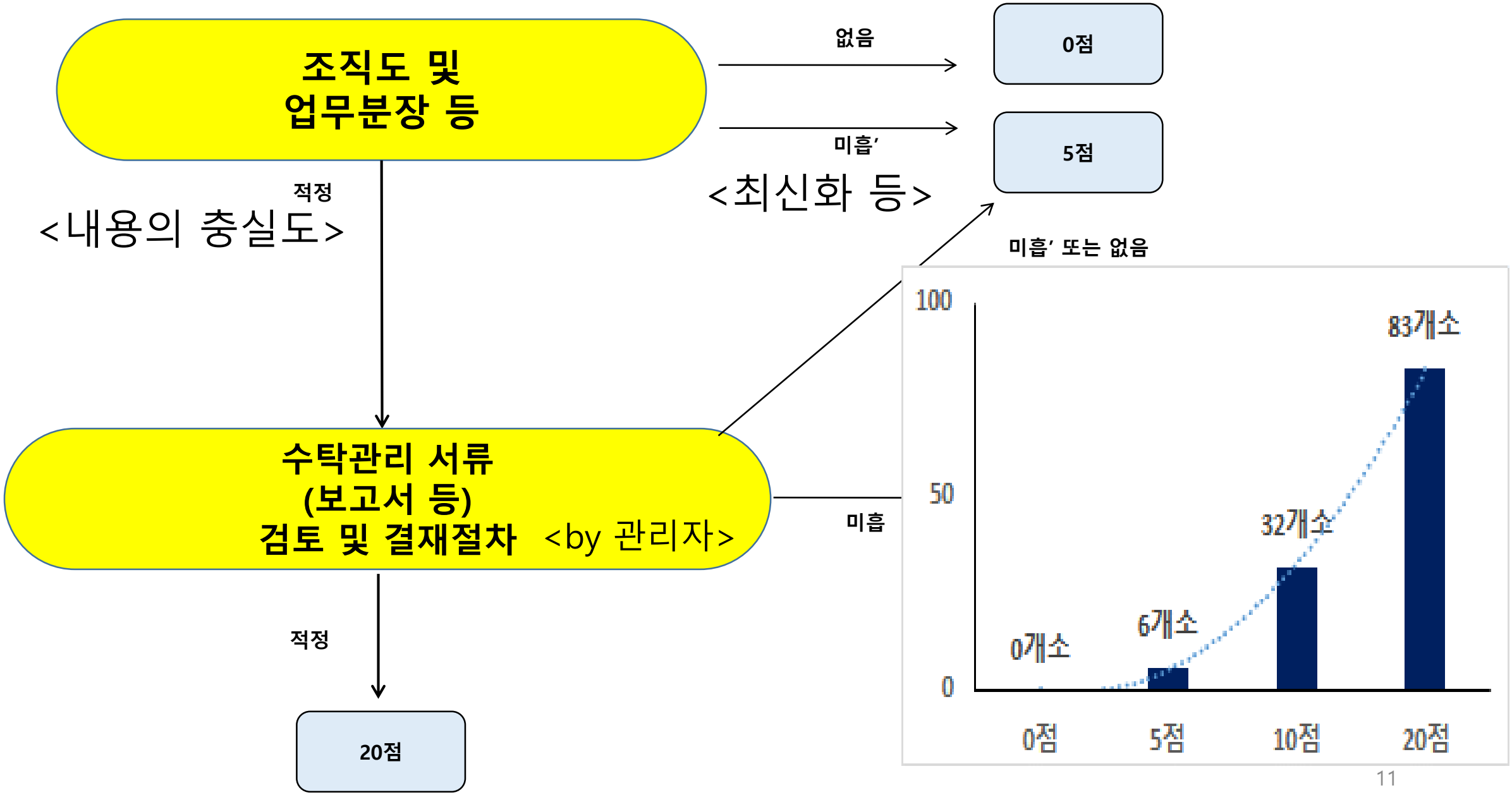

A-2항목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A.2.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배점: 90) `20년 69.0점 → `22년 71.3점	
평가항목 A.2.1.1	평가기준 (배점: 40) 평균득점: 28.5점	평가결과
법정인력의 경력	① 개인별 평균 배점이 4.2점 이상	□ 40
	② 개인별 평균 배점이 3.7점 이상	□ 30
	③ 개인별 평균 배점이 3.2점 이상	□ 20
	④ 개인별 평균 배점이 3.2점 미만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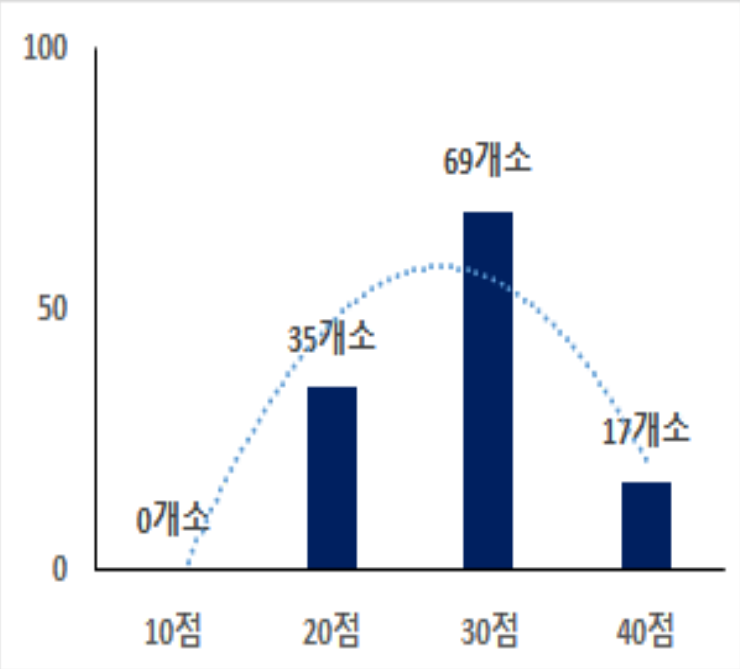

평 가 취 지

○ 수탁 업무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자격별 경력 연수(누적)를 토대로 기관의 전문 인력 보유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 보건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평가방법

대상인력	적용요건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 (추가인력 평가 제외)	1)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이직자, 퇴직자 포함) 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 의사, 기술사,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 수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6) 업무분장 상에 포함

+ 판단기준

□ 경력 산정 기준

○산업보건·위생분야 : 자격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의 **산업보건·위생분야 실무경력**

○의사, 간호사 분야 : 면허 취득 후 사업장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의), 일반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산업보건분야 실무경력**

※ 단, 일반병원 등 일반 보건 경력 제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판단기준

구분	자 격	산업보건 실무 경력 누적연수(1인당)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5.0	4.5	4.0	3.5
㉯	산업위생관리기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5	4.0	3.5	3.0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4.0	3.5	3.0	2.5
㉱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 전문의	5.0			4.5
㉲	「의료법」에 따른 의사	5.0	4.5	4.0	3.5

$$\frac{\Sigma \text{ 개인별 자격에 따른 실무경력 누적 연수별 점수}}{\Sigma \text{ 지정한계 최소인력}}$$

A.2.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배점: 90) `20년 45.5점 → `22년 47.0점	
평가항목 A.2.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9.4점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①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6점 이상	□ 20
	②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4점	
	③ 전문인력 추가확보에 따른 합산점수가 2점	
	④ 전문인력 추가확보가 없는 경우	
평 가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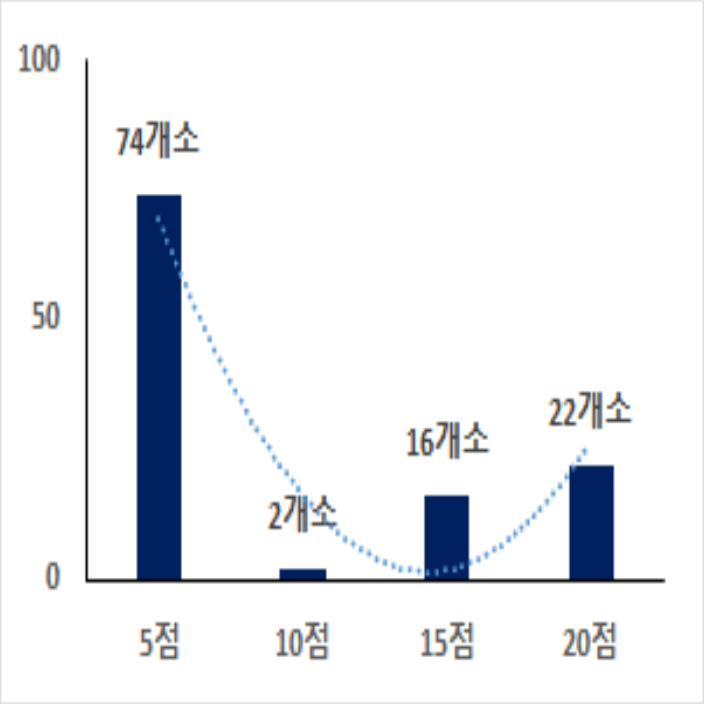

○ 법정 보유 기준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문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하여 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유도

평가방법

법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추가로 지정된 채용 인력에 대하여 자격(면허)증,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대장, 근무형태, 출근부, 업무일지, 상태보고서 서명 여부 등을 중점 확인

+ 판단기준

대상인력	적용요건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을 "초과"하여 지정된 인력	1)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이직자, 퇴직자 포함) 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 의사, 기술사,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 수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 제외 6) 업무분장 상에 포함

*** 겸직인 경우 해당 점수의 50% 반영/ 1인이 다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상위 자격 1개 점수만 적용**

□ 자격별 합산점수 산출방법

구분	❶의사, 지도사, 기술사, 산업전문간호사	❷기사, 간호사	❸산업기사
자격별 가중치	6점	4점	2점
합산점수 산출산식	∑ 자격 분야별 추가 인원 × 자격별 가중치 = 점		

A.2.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배점: 90) `20년 94.0점 → `22년 96.3점	
평가항목 A2.1.3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8.9점	평가결과
법정인력 업무전문화 노력 (업무전담 및 정규직화)	① 수탁한계사업장 : _____개소 이하 ② 시행령 [별표8] 자격별 인력의 합 : _____명 - 가) 인력 : ___명×2(가중치) = _____명 - 나),다),라) 인력 : _____명(인원수) ③ 법정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합 : _____명 - 가) 인력 : ___명×2(가중치) = _____명 - 나),다),라) 인력 : _____명(인원수) ⇒ (③÷②)×30점 = _____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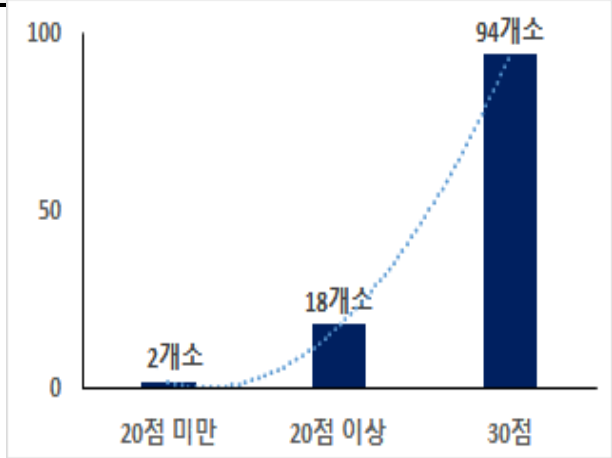 	(최대 30점)

평 가 취 지
○ 전체인력 중 정규직 인력 비율에 대한 평가로 업무전담 및 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예방활동 전개 유도

평가방법

수탁한계 사업장수에 따른 법정 인력기준 인원수 대비 법정 최소 정원의 정규직 현원 비율로 평가 "가" 인력(의사)은 가중치 2배 적용

+ 판단기준

대상인력	적용요건
지정한계 필수 신고인력* (추가인력 평가 제외)	1)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유지 인력만 적용(이직자, 퇴직자 포함) 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와 인력대체자 중 높은 자격기준으로 평가 3) 의사, 기술사, 지도사를 포함한 모든 인력은 주 4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인정 4) 국고 전담 및 사무업무자 제외 5) 수탁사업장 기술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6) 업무분장 상에 포함

*** 지도사 기관은 평가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 Σ (정규직 지정인력×가중치) ÷ Σ (최소 지정인력×가중치) 〕× 30점
※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 · 외부) (배점: 120) `20년 54.0점 → `22년 56.5점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균득점: 11.3점	평가결과
지도요원 교육·훈련계획 수립·이행 여부	① 교육·훈련 계획이 적정한 경우	□ 20
	② 교육·훈련 계획이 미흡한 경우	□ 10
	③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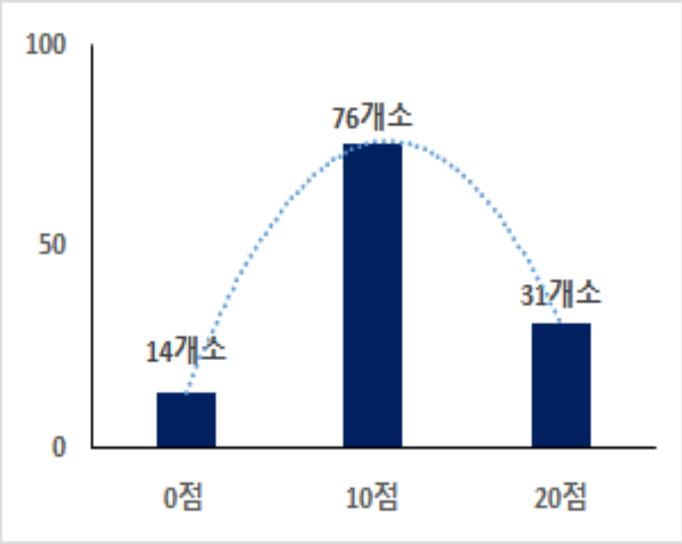

○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지도요원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방법

○ 매년 지도요원의 교육 · 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

* 교육 · 훈련 : ❶내부교육, ❷전문화교육, ❸세미나, ❹학술대회 등

○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는 교육 이수증, 관련 문서 등을 확인

+ 판단기준

○ 교육 · 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교육훈련계획(①내부교육, ②전문화 교육 ③세미나 또는 학술대회) 중 1가지 이상누락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신규 입사자는 3개월 이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고, 6개월 이내 실적을 확인

- 신규 입사자 교육계획 및 이행 누락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신규 입사자 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3분기 이내(9.30)에 입사한 경우 당해 연도 교육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4분기(10.1~)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차기년도부터 수립해야 함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 · 외부) (배점: 120) `20년 56.3점 → `22년 50.0점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15.0점	평가결과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여부	① 모든 지도요원이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	□ 30
	② 일부 지도요원이 전문교육을 이수	□ 15
	③ 지도요원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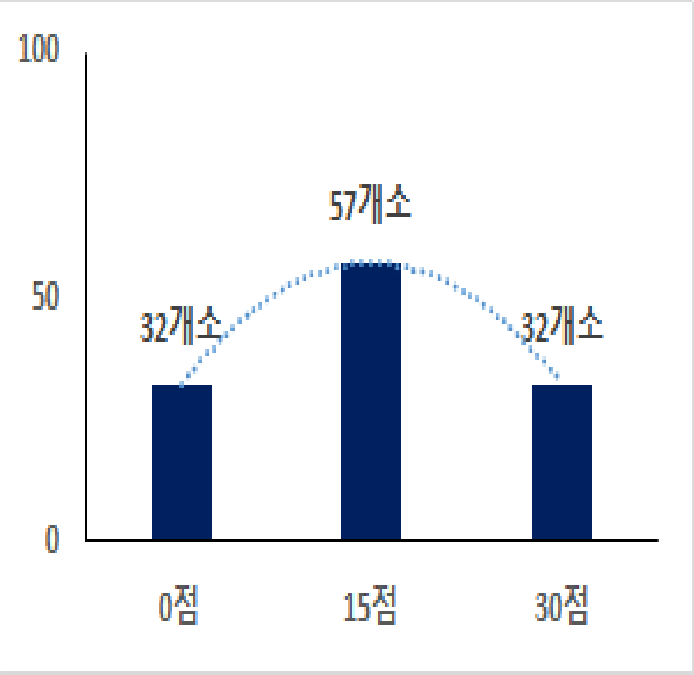

평 가 취 지

○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지도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평가방법

○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전문교육 이수여부를 평가

○ 【인정기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

○ 【인정과정】 8시간의 전문화교육(인터넷 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 평가대상 기간의 1/2 고용유지 법정 최소 + 추가 인력

+ 판단기준

○ 소속인력에 대한 전문화교육 이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평가

- 모든 지도요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8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30"
- 모든 지도요원 50% 이상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8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15"
- 모든 지도요원 50% 미만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8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0 "

(단, 온라인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의 2배 적용)

※ 평가대상기간 내 신규입사자가 입사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법적인 의무교육은 제외

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 - 외부) (배점: 120) `20년 72.0점 → `22년 77.0점	
평가항목 A2.2.3	평가기준 (배점: 10) 평균득점: 7.7점	평가결과
기타 외부 일반교육 이수 여부	①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100%	□ 10
	②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80% 이상	□ 8
	③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40% 이상	□ 6
	④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20% 이상	□ 4
	⑤ 외부 일반교육 이수율 20% 미만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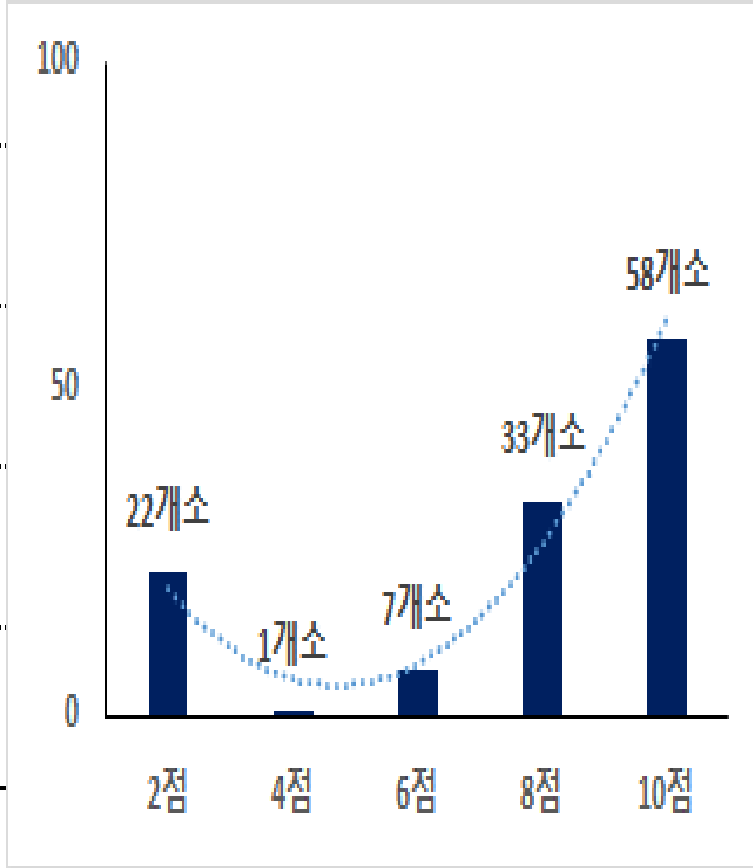

평 가 취 지

○ 지도요원의 전문화교육 외에 교양 등 일반교육 이수율을 평가하여 현장 보건관리 활동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평가방법

○ 소속인력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일반교육 이수 수준을 평가

○ 【인정기관】 외부 전문교육기관

○ 【인정과정】 직무수행에 보조적인 일반교육을 이수한 경우(인터넷교육과정 포함)

※ 과정예시 : CS교육, 강사전문 과정, 통계, 기업진단, 청렴, 컴퓨터, 외국어 등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법정교육 제외

○ 【인정조건】 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 2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인력 및 추가인력

※단, 신규입사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산식 이수율(%) = (외부일반교육 이수자수 ÷ 법정 및 추가 수행인력수) * 100

A.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20년 61.0점 → `22년 61.0점	
평가항목 A22.4	평가기준 (배점: 10, 감점: -5) 평균득점: 6.1점	평가결과
지도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① 지도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 10
	② 지도요원의 능력개발을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 가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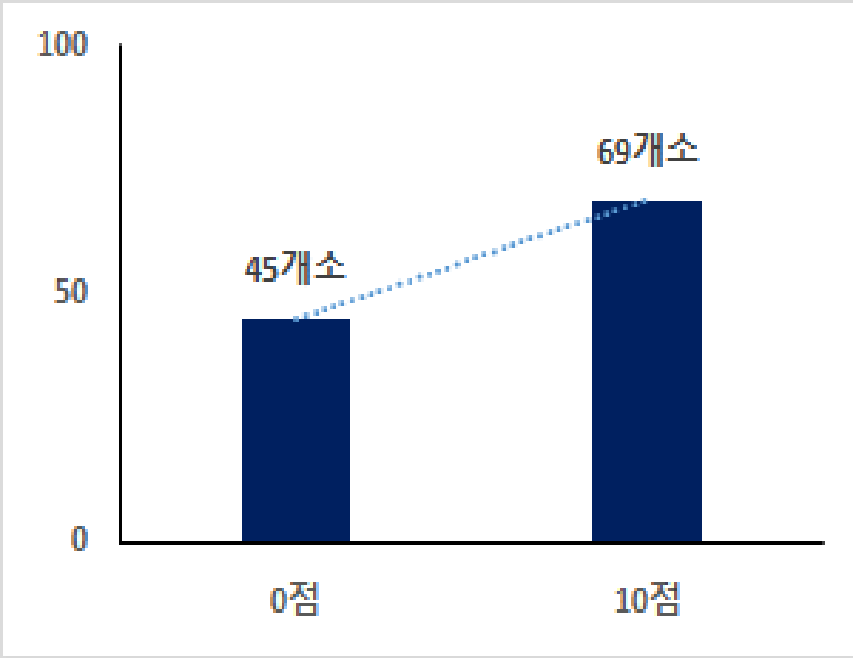

○ 소속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도요원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평가방법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 학위 수료(졸업), 대학의 강의 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 컴퓨터활용 교육 등을 위한 기관장의 시간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실적 유무를 평가

+ 판단기준

○ 지도요원의 능력개발 관련 내부규정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거나, 연간 사업계획 등 종합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

○ 시간 및 금전적 지원 실적은 관련 증빙문서(서류)가 있어야 함
(단, 도서구입은 실적에서 제외)

예시) 시간적배려 : 유급휴가, 유연근무제 시행 관련 문서 또는 서류

금전적지원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예산 집행 문서 또는 서류(예> 학원수강비, 응시료)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A.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20년 91.5점 → `22년 91.0점	
평가항목 A22.5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8.2점	평가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실태	①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4회 이상 운영	□ 20
	②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3회 이상 운영	□ 15
	③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2회 이상 운영	□ 10
	④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이 년 1회 이상 운영	□ 5
	⑤ 자체 세미나 또는 학습조직을 운영하지 않음	□ 0
평 가 취 지		

○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여부 평가를 통한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방법

○ **자체 세미나: 산업보건에 관한 새로운 이슈나 정책방향, 지식 ·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표 및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

○ **학습조직: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의 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

+ 판단기준

○ **[참여율 인정조건]**

– 전체 지도요원(법정 및 추가인력)의 **50% 이상 참여 시 인정**

※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계획과 결과 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운영 실적으로 불인정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후 환산점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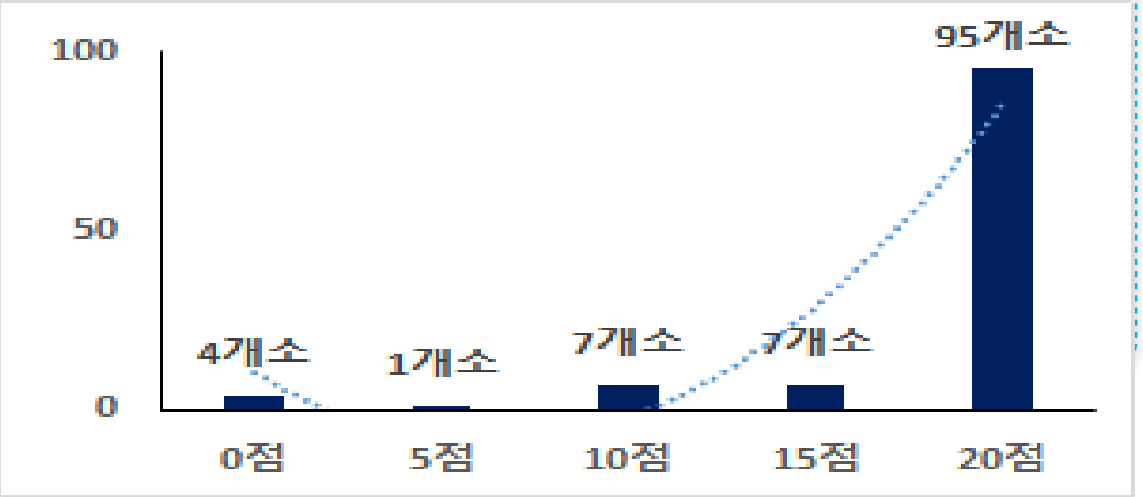

A.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배점: 120) `20년 80.3점 → `22년 83.7점	
평가항목 A22.6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5.1점	평가결과
각종 학술대회 등 참여 실적	① 모든 지도요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100%)	□ 30
	② 지도요원의 8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25
	③ 지도요원의 6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20
	④ 지도요원의 4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15
	⑤ 지도요원의 20% 이상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10
	⑥ 지도요원의 20% 미만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보건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정책 방향 등의 정보·지식 습득을 위한 산업보건관련 학술대회 참여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소속지도요원의 산업보건관련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 실적을 평가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고용을 유지한 법정 및 추가인력(이직자, 퇴직자 포함)

□ 평가산식

– 참석률(%) = (연평균 학술대회 참여자수 ÷ 법정 및 추가 인력수) *100

+ 판단기준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산업보건관련 국내 학술대회

– ICOH, AIHCe, 한중일학술집담회 등 산업보건 관련 국제 학술대회

– 안전보건공단 주관 산업보건 관련대회 또는 세미나

–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과정

–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사 연수교육' 과정 등

○ 수료증이나 참가확인증이 없는 경우는 실적 미인정

※ 단순 학회 연회비 등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 (A.2.2.5)항목의 자체적으로 시행한 세미나는 동 평가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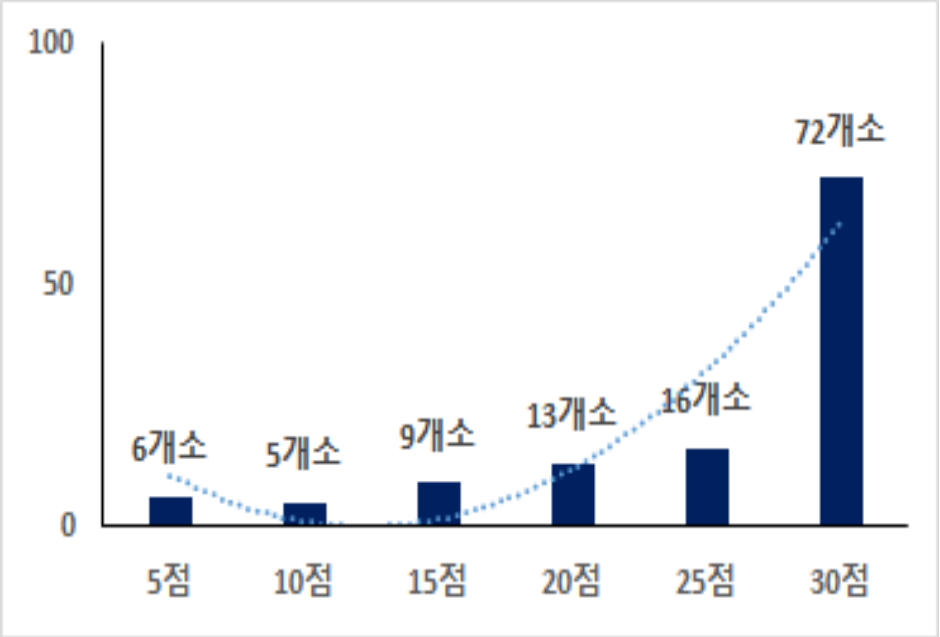

A-3항목

장비 유지관리 및 활용

A.3.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배점: 40) `20년 73.0점 → `22년 80.0점	
평가항목 A.3.1.1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균득점: 16.0점	평가결과
장비관리지침 및 검·교정 여부	①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고 자체 지침에 따라 검·교정이 적정한 주기에 실시된 경우	□ 20
	② 장비관리 지침을 일부 보유한 경우로써 보유 장비 관리 지침 자체 주기에 따라 검·교정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 10
	③ 장비관리 지침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 장비관리 지침의 자체 주기에 따른 검·교정 실적이 없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보유 장비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향상 등 장비의 성능 유지·관리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평가방법

○장비관리(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유 장비의 검 · 교정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보유 장비의 성능 유지 ·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검교정 대상장비(9종) : 유량계, 표준소음발생기, 소음측정기, 조도계,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산소 포함), 절연저항계,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WBGT(습구흑구 온 · 습도계)

+ 판단기준

○ 장비관리(운용)지침 :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 마련 유무 평가

○ 검 · 교정 : 주기설정 적정성 및 누락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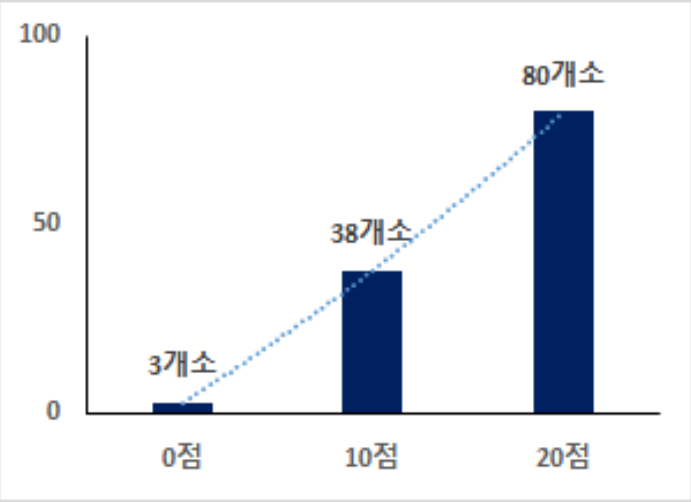

※ 검 · 교정 주기는 장비관리(운용)지침에 따르되, 최대 3년(36개월)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 장비관리(운용)지침이 없는 경우, 검 · 교정 주기는 3년(36개월)으로 적용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는 매뉴얼 상의 센서 교체주기를 기준으로 함

A.3.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배점: 40) `20년 84.0점 → `22년 86.5점	
평가항목 A3.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7.3점	평가결과
장비사용대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①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 모두 보유 장비의 기록관리가 100% 이뤄지는 경우	□ 20
	②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 모두 보유 장비의 80% 이상에 대해 기록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 16
	③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 장비의 80% 미만에 대해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 12
	④ 장비이력카드 또는 사용 대장 중 1개만을 보유하고 해당 부분만 기록 관리하는 경우	□ 8
	⑤ 장비이력카드 또는 사용 대장 중 1개만을 보유하고 기록 관리가 없는 경우	□ 4
	⑥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이 없음	□ 0
평 가 취 지		

○ 보유 장비의 이력카드, 사용 대장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를 통한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평가방법

○ 장비이력카드 및 장비사용대장에 대한 보유 여부 및 각각의 기록관리가 적절한지 평가

+ 판단기준

○ 기록관리에 대한 평가는?

- 장비이력카드: 장비의 용도, S/N, 점검일자, 검 · 교정 및 수리내역
- 장비사용대장: 장비 반출 및 반입 내역, 장비 보정내역 사용기록

작업환경관리장비(6종)	건강관리 장비(2종)
·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 온열조건 측정기(WBGT) 및 조도계 · 직독식 유해가스농도 측정기(산소 포함) ·국소배기시설 성능 시험장비	·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 혈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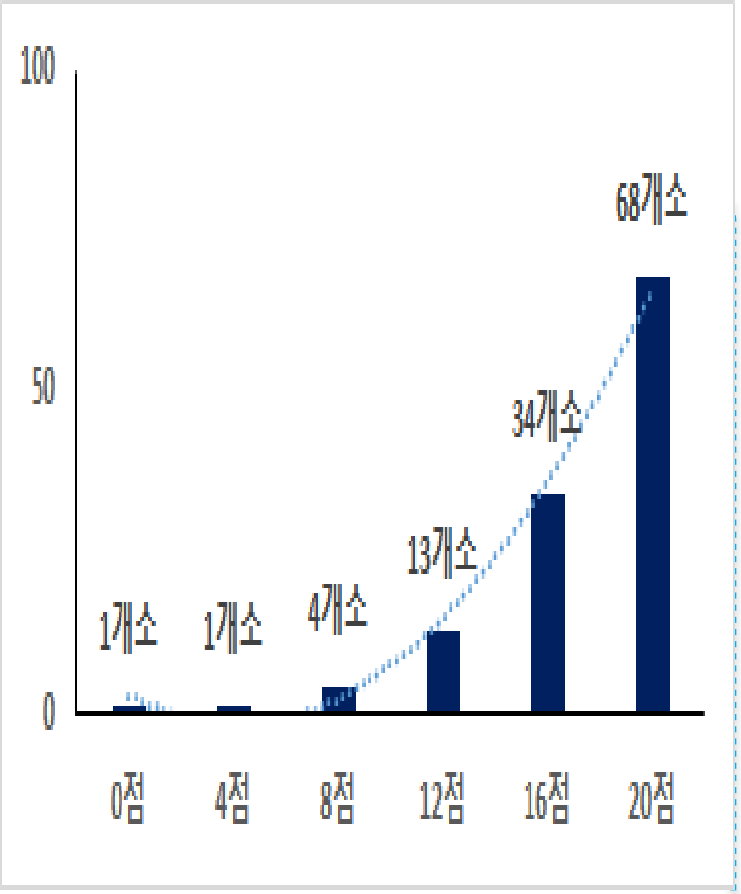

A.32	장비활용 실적 (배점: 30) `20년 59.3점 → `22년 64.7점	
평가항목 A.32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19.4점	평가결과
장비활용 실적	분야별(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장비에 대해 사업장 당 활용실적 산정 후 아래 표에서 점수부여	점 * 아래 표에서 최종 점수 산정
평 가 취 지		

○ 수탁업무 수행 시 장비활용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사업장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현장의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평가방법

○ **작업환경관리장비 및 건강관리 장비활용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 : 2개 분야**별 아래 선정기준으로 **각각 5개소** 무작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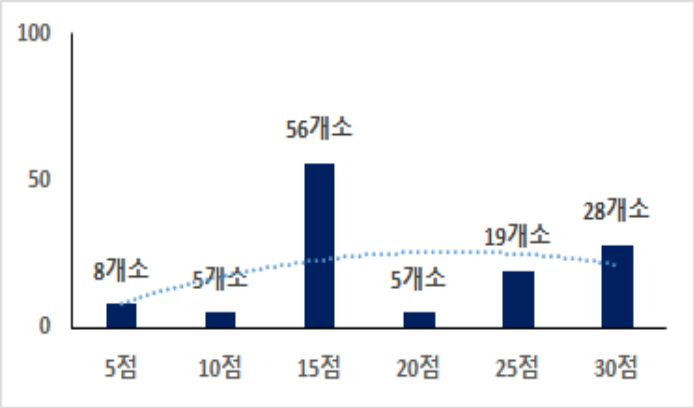

○ **작업환경관리장비**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건강관리장비** : 장년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 요관찰자(C)/유소견자(D) 등 **기초질환자 보유사업장, 뇌심혈관질환 발병사업장**

+ 판단기준

○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을 산출한 후 아래 <표>를 이용한 조합평가

- 작업환경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회)

$$= \frac{\text{선정된사업장 작업환경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text{5(선정된사업장수)}}$$

- 건강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회)

$$= \frac{\text{선정된사업장 건강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text{5(선정된사업장수)}}$$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 조합표]

작업환경관리장비 / 건강관리장비	3회 미만	3회 이상	4회 이상
7회 미만	5	10	15
7회 이상	10	20	25
10회 이상	15	25	30

* **장비활용 실적은 장비사용대장, 상태보고서 등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A.3.3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배점: 10) `20년 91.0점 → `22년 98.0점	
평가항목 A.3.3	평가기준 (배점: 10) 평균득점: 9.8점	평가결과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①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모두(100%) 숙지	□ 10
	②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일부(50% 이상) 숙지	□ 5
	③ 장비사용 및 보정수행 방법 일부(50% 미만) 숙지 미흡	□ 0
평 가 취 지		

○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요원(의사, 간호사, 산업위생분야 지도요원)의 이해도를 확인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탁업무 수행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평가방법

○의사, 간호사, 위생분야 지도요원의 법정장비[작업환경관리장비(6종), 건강관리장비(2종)] 에 대한 사용법 및 보정방법에 대한 숙지상태를 면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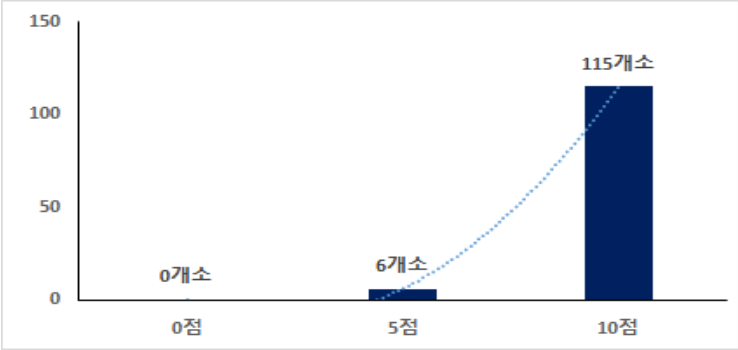

○(산업위생 1명) 작업환경관리장비를 대상으로 총 3문항 평가

- 장비 사용법 : 선정된 장비 2종의 사용법에 대한 면담 평가(총 2문항)
- 장비 보정법 : 정량 보정이 필요한 필수 선정 장비의 **보정방법 면담 평가**(총 1문항)

○ (의사, 간호사 중 1명) 건강관리장비를 대상으로 총 2문항 평가

- 장비 사용법: 선정된 장비 2종의 사용법에 대한 면담 평가(총 2문항)

+ 판단기준

○위생분야 3개 문항, 의사 또는 간호사는 2개 문항을평가하여 총 5개 문항중 숙지상태가 양호한 문항수 비율산출

□ 평가산식

○ 숙지율(%) = (적정 답변수 ÷ 질문수) * 100

※ 지도사 기관(위촉된 의사만 있는 경우)은 지도사 1명만 선정

A-4항목

업무 표준

A.4.1	업무 표준의 수립 (배점: 20, 가점: +10, 감점: -10)	
평가항목 A4.1.1	평가기준 (배점: 20, 감점: -5) 평균득점: 16.9점	평가결과
자체 업무매뉴얼의 보유 및 활용 여부	①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 매뉴얼이 적정하고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도요원 교육·훈련·열람 등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 `20년 76.5점 → `22년 84.5점	□ 20
	②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 매뉴얼이 미흡하거나, 정기적인 현행화 등 일부 구성 내용이 미흡 또는 지도요원 교육·훈련·열람 등 활용이 미흡한 경우	□ 10
	③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0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 가 취 지

○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내용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수행 요원들이 숙지토록 하는 등 수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

평가방법

○사업장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적절한 내용으로 문서화**하여 상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업무 수행요원들이 숙지**하고있는지 여부 평가

+ 판단기준

★ **업무매뉴얼 : 지도요원 분야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으로 구분하여 작성, 내용의 적정성 평가**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도사의 업무 및 직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함.**

★ **업무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현행화되고 있어야 함.**

★ **업무매뉴얼에 대한 지도요원(신규자 포함) 교육 · 훈련 · 열람 등 업무수행 시 지도요원의 활용도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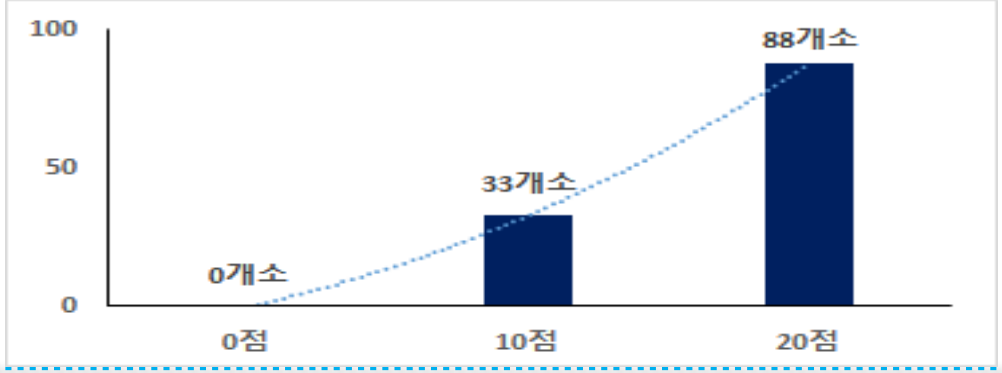

○ 지도요원 분야별 업무 매뉴얼 적정성

○ 업무매뉴얼의 정기적 현행화

○ 지도요원 교육·훈련·열람 등 활용 적정성

A.4.1	업무 표준의 수립 (배점: 20점, 가점: +10점, 감점: -10점) `22년 76점(신규)	
평가항목 A4.1.2	평가기준 (가점: +10, 감점: -10) 평균득점: 7.6점	평가결과
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	① K2B 입력오류가 없는 경우	□ 0
	② K2B 입력오류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 -2
	③ K2B 입력오류 비율이 3% 이상 ~ 10% 미만인 경우	□ -5
	④ K2B 입력오류 비율이 10% 이상 또는 K2B 미가입	□ -10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 여부	① 기한 내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한 경우	□ +5
	②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 또는 미작성 · 미등록한 경우	□ 0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① 평가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	□ +5
	② 평가보고서 작성의 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	□ 0
평 가 취 지		

○ K2B 전산 관리 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신뢰도 향상 유도

○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의 이의제기 감소 및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 K2B 입력 결과를 집계하여 지연/누락/오류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전체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 K2B 전산에 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 등록기한 준수 및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판단기준

$$\text{입력오류 비율} = \frac{\text{상태보고서 입력 오류 건수}}{\text{평가년도 상태보고서 입력 실적}} \times 100$$

※ K2B 전산입력 지연여부 확인(매월 상태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K2B에 등록 준수 확인)

입력 오류 산출 기준
① 입력 오류 건수 - 임의 사업장 입력 사업장(입력된 상태보고서 수) ※공단 산재통계 조회 시 확인 - 상태보고서 입력 지연 사업장 - 상태보고서 미첨부 건수 ② 위탁사업장 입력을 누락한 경우는 "0" 점으로 평가 ③ 위탁사업장 정보가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장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체평가 보고서

▶ 전산 등록기한 준수 여부(공고일에 안내 예정)

▶ 작성내용 누락 여부

(단순히 점수만 기재시 가점 불인정)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K2B 전산 관리 적정성	입력오류가 없는 경우	37 (30.6%)
	입력오류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80 (66.1%)**
	입력오류 비율이 3% 이상 ~ 10% 미만인 경우	4 (3.3%)
	입력오류 비율이 10% 이상 또는 K2B 미가입	0 (0%)
자체 평가 보고서 등록	**기한 내 등록한 경우**	**110 (90.9%)**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 또는 미작성. 미등록한 경우	11 (9.1%)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내용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	**109 (90.1%)**
	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된 경우	12 (9.9%)

A.4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배점: 40) `20년 88.7점 → `22년 90.0점	
평가항목 A.42	평가기준 (배점: 40) 평균득점: 36.0점	평가결과
사업장 관리카드 적정성	① 사업장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 10
	② 누락률이 20% 이하인 경우	□ 5
	③ 누락률이 20% 초과인 경우	□ 0
상태보고서 적정성	①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100%인 경우	□ 30
	②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90% 이상인 경우	□ 25
	③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80% 이상인 경우	□ 15
	④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 이상인 경우	□ 5
	⑤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 미만인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사업장 관리카드의 작성 및 보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수탁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유도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보건관리 상태보고서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 교체에 따른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의 영속성 확보 유도

평가방법

○수탁사업장의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작성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필요시 사업장 방문, 팩스 등을 통한 확인)

※수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확인하여 평가

+ 판단기준

○ 사업장관리카드 내용 누락률

(관리카드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수 ÷ 선정된 사업장수) x 100

○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적정 상태보고서수 합계 ÷ 평가대상기간 법정 방문횟수 합계) x 100

구분	평가기준 (배점: 40)	평가결과
사업장 관리카드 적정성	① 사업장관리카드의 내용이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 10
	② 누락률이 20% 이하인 경우	□ 5
	③ 누락률이 20% 초과인 경우	□ 0
상태보고서 적정성	①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100%인 경우	□ 30
	②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90% 이상인 경우	□ 25
	③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80% 이상인 경우	□ 15
	④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 이상인 경우	□ 5
	⑤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적정 비율 60% 미만인 경우	□ 0

<사업장 관리카드 적정성>

○ **카드가 없는 수탁사업장이 1개소 이상 있는 경우 "0점"**

○ 내용 중 1개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으로 판단

○ 사업장 관리카드와 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한 단계 하향

<상태보고서 적정성>

○ 상태보고서가 당일 현장에서 전달되는 체계가 아닌 기관은 "문서화"로 평가 가능하며, 팩스 등으로 회신 받아 **기관 보관용과 불일치할 경우 "0점" 평가**

○ **적정 비율 평가 : 상태보고서상 방문일자 및 서명 여부, 사업장담당자 서명 여부, 사업장의 보고서에 대한 결재 유무** 등의 적합 여부로 평가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사업장 관리 카드 적정성	내용 누락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55 (45.5%)
	누락률이 20% 이하인 경우	**62 (51.2%)**
	누락률이 20% 초과인 경우	4 (3.3%)
상태 보고서 적정성	**적정 비율 100%인 경우**	**102 (84.3%)**
	적정 비율 90% 이상인 경우	16 (13.2%)
	적정 비율 80% 이상인 경우	2 (1.7%)
	적정 비율 60% 이상인 경우	0 (0%)
	적정 비율 60% 미만인 경우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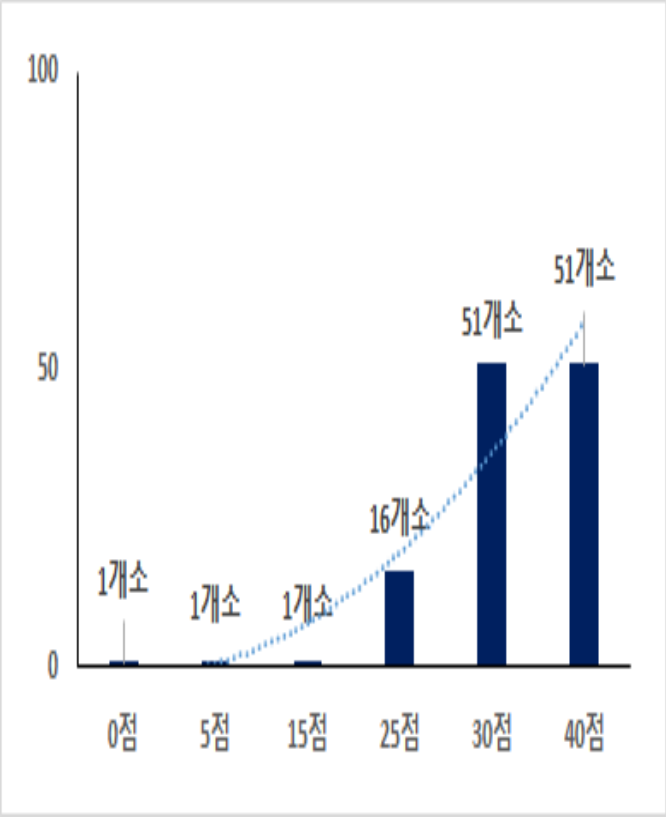

A-5항목

포상, 행정처분

A.5.1	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가점: 최대 +10점) `20년 0.7점 → `22년 0.3점	
평가항목 A.5.1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점) 평균득점: 0.3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① 대통령상: ____건 × 10점 = ____점 ② 국무총리상: ____건 × 8점 = ____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상: ____건 × 6점 = ____점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____건 × 4점 = ____점 ⑤ 지자체장상 등: ____건 × 2점 = ____점 ⇒ 총점: ①+②+③+④+⑤ = ____점(최대 +10점)	____점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 분야 유공 기관 및 소속 지도요원의 포상실적 발굴을 통한 사기 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유도

+ 판단기준

○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산업재해예방관련**으로받은

포상실적 상장 또는 상패 등으로 확인/평가

○ **지자체단체장 등은 지자체장, 고용부 지방관서장, 공단 일선기관장과 민간단체인 보건관련 학회 및 협회장으로 한정함**

- 평가기간 내 근무하는 동안 포상한 실적에 한함

(보유인력 중 포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포상을 받을 당시 소속기관에 한하여만 실적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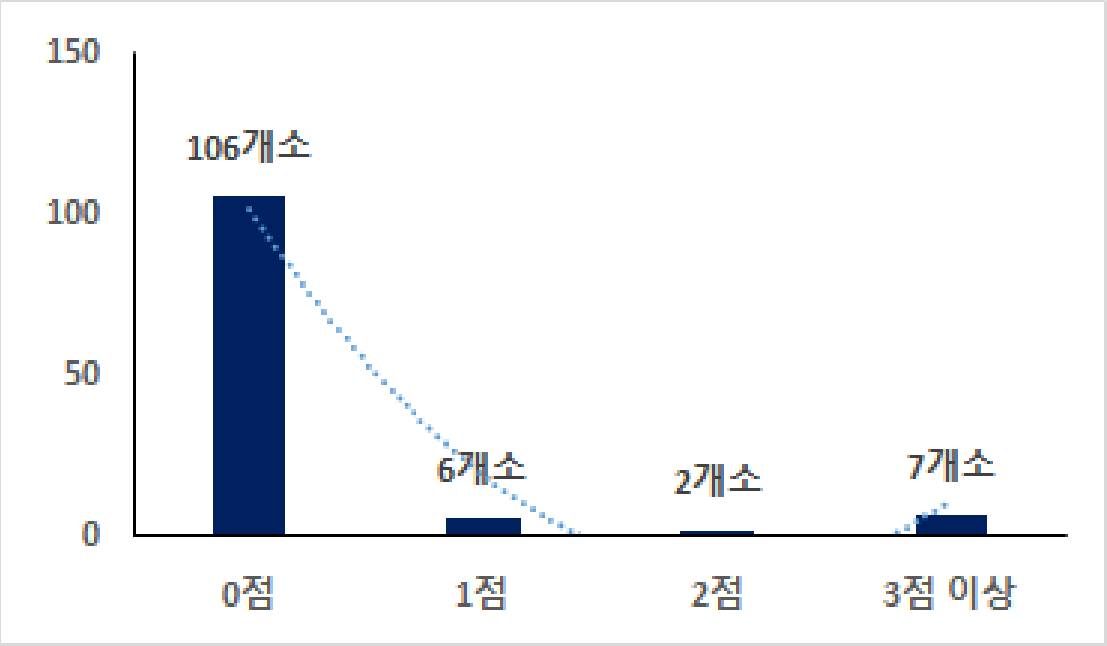

A.5.2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대 -80) `20년 –2.4점 → `22년 –0.1점	
평가항목 A.5.2	평가기준 (감점: 최대 - 80점) 평균득점: -0.1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업무정지 처분 ____개월 × (-30)점 = _____점 ⇒ 총점: _____점(최대 -8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 판단기준

○ **업무정지 처분 개월 수 당 30점 감점, 최대 80점 감점**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예시 1) 업무정지 3.5개월 × −30점 = −105점 → 80점

(예시 2) 업무정지 53일/30 × −30점 =−52.9 → 53점(소수점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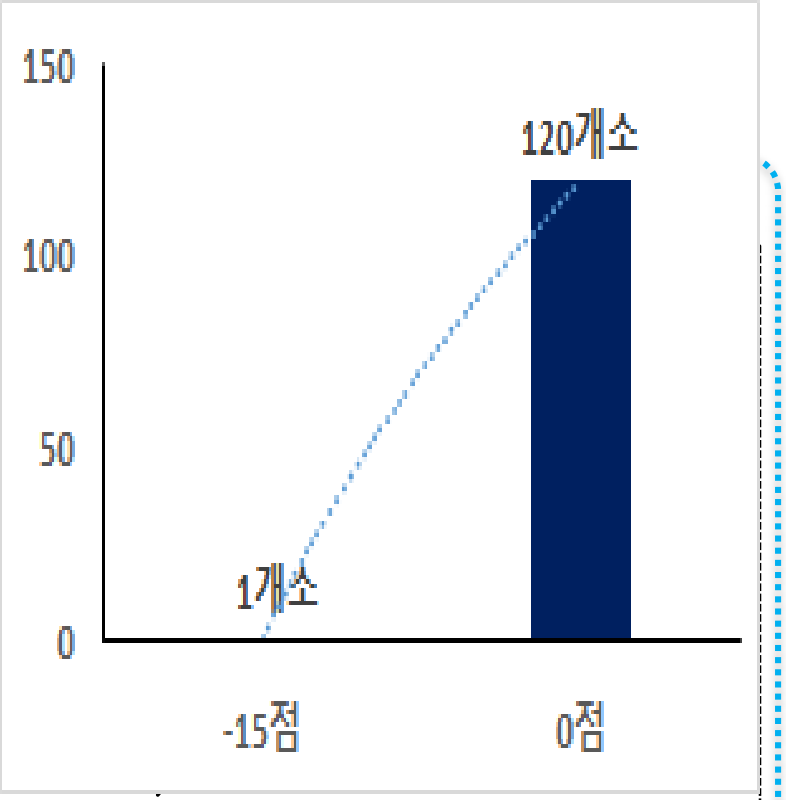

A.5.3	최근 1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최대 -20점) `20년 –0.6점 → `22년 –0.3점	
평가항목 A.5.3	평가기준 (감점: 최대 - 20점) 평균득점: -0.3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시정조치·경고 처분 ____건 × (-5)점 = ____점 ⇒ 총점: ____점(최대 -20점)	____ 점
평 가 취 지		

○ 시정조치 · 경고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 지도·감독 등에 의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당 5점 감점, 최대 -20점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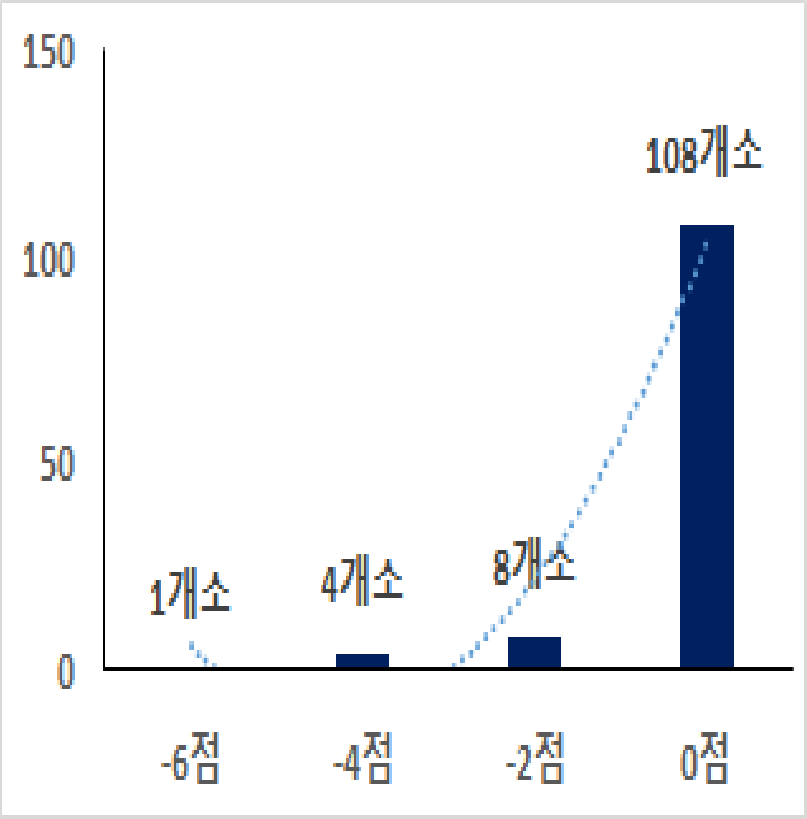

A-6항목

종합화(컨소시엄 활동)

A.6.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가점: 최대 +10점) `20년 3.1점 → `22년 3.2점	
평가항목 A.6.1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점)평균득점: 3.2점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협약 기관 간 교류실적 : ____건 × 1점 = ____점 ⇒ 총점: ____점(최대 10점)	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 사업장 업무상질병 예방 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기관의 제한된 기술력 극복 등 상호보완 노력 유도

평가방법

○ 보건분야 컨소시엄 구성 등 종합기술지원 교류실적 평가

+ 판단기준

○ 평가대상기간 내 컨소시엄(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 건수 반영

- 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 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며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

- 단, 동일사업자[1]인 기관과 연계할 경우 평가점수의 50% 반영

[1]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컨소시엄(협약) 체결기관 교류실적 (건당 1점)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점)	평가결과
협약 기관간 교류실적 : ____건 × 1점 = ____점 ⇒ 총점: ____점(최대 10점)	____ 점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교류실적이 10점인 경우	28 (23.1%)
교류실적이 5점 이상인 경우	11 (9.1%)
교류실적이 3점 이상인 경우	7 (5.8%)
교류실적이 3점 미만인 경우	10 (8.3%)
교류실적이 없는 경우	**65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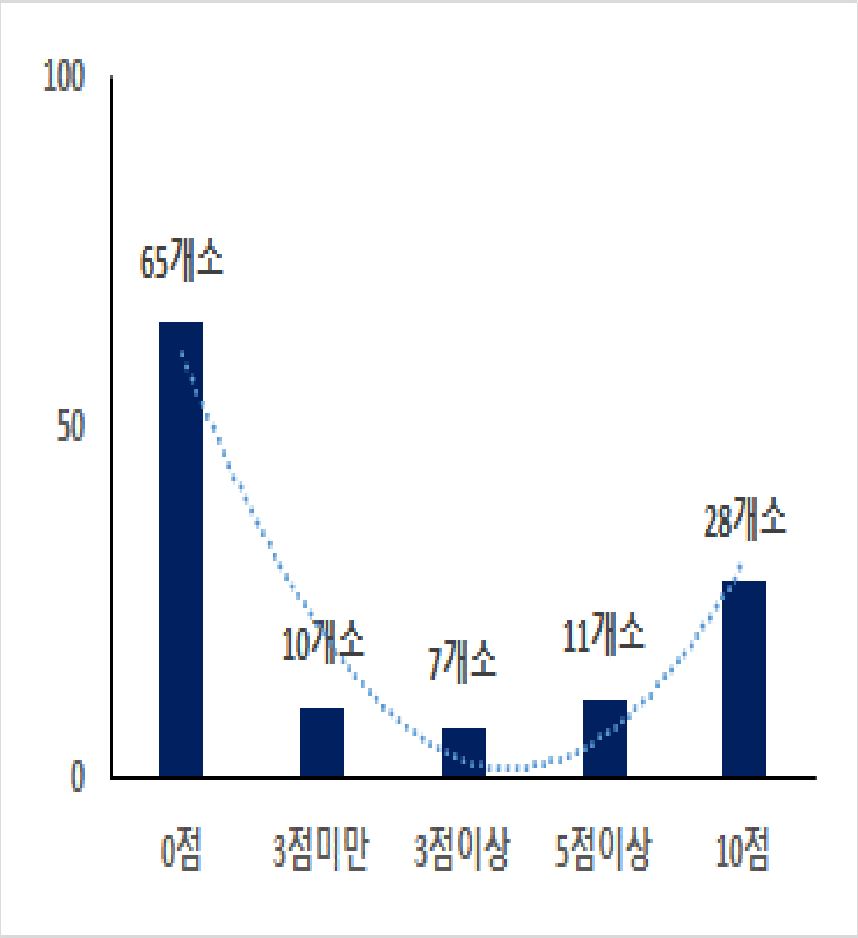

-B항목-

업무성과

(기술지도 충실성/재해감소/만족도 및 우수사례)

B-1항목

기술지도의 충실성

(지도요원 기술지도/업무상질병예방 업무 수행/조치 미이행사업장 관리/ 위험성평가/현장모니터링)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54.7점 → `22년 68.7점	
평가항목 B.1.1.1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0.6점	평가결과
요양 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평가	① 업무적합성평가를 80% 이상 수행한 경우	□ 30
	② 업무적합성평가를 60% 이상 수행한 경우	□ 20
	③ 업무적합성평가를 40% 이상 수행한 경우	□ 10
	④ 업무적합성평가를 40% 미만 수행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보건의의 직무 중 업무적합성평가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유도

평가방법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후 업무복귀 시 **의사의 업무적합성 평가 여부** 확인

+ 판단기준

□ 평가산식

○실시율(%) = (업무적합성평가 실시 건수 ÷ 업무적합성평가 대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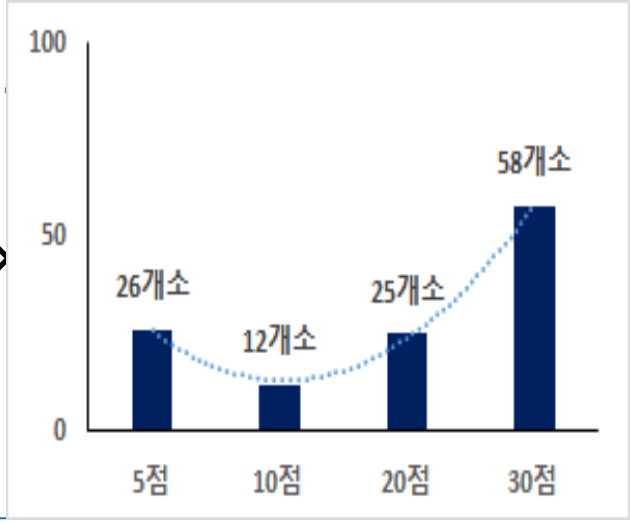

□ 판단기준

○선정된 근로자 대비 업무적합성 평가 수행한 건수 파악

(업무적합성 평가 건수가 다수인 근로자도 1건의 평가로 인정)

★ **산업재해(질병, 사고)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5개소**

※ 단,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대상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 선정된 사업장 당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자를 최소 1인(최대 5인) 이상 선정

※ 총 대상자수 : 최소 5명, 최대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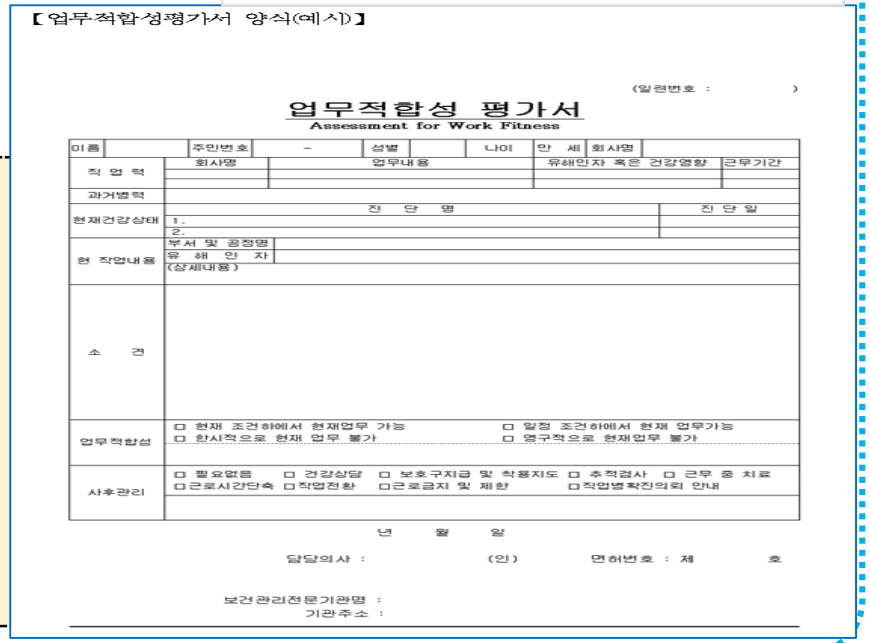

【업무적합성평가서 양식(예시)】

(일련번호 :)

업무적합성 평가서

Assessment for Work Fitness

이름		주민번호	-	성별		나이	만 세	회사명	
직업력	회사명	업무내용			유해인자 혹은 건강영향			근무기간	
과거병력	진 단 명							진 단 일	
현재건강상태	1. 2.								
현 작업내용	부서 및 공정명								
	유 해 인 자 (상세내용)								
소 견									
업무적합성	□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 업무가능 □ 항시적으로 현재 업무 불가 □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								
사후관리	□ 필요없음 □ 건강상담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추적검사 □ 근무 중 치료 □ 근로시간단축 □ 작업전환 □ 근로금지 및 제한 □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년 월 일

담당의사 : (인) 면허번호 : 제 호

보건관리전문기관명 :

기관주소 :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85.5점 → `22년 91.0점	
평가항목 B.1.12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8.2점	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①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80% 이상 실시한 경우	□ 20
	②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60% 이상 실시한 경우	□ 15
	③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4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를 40% 미만 실시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의사 및 간호사의 직무 중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지도 실시여부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유소견자, 요관찰자 관리 유도

평가방법

○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 C, D 판정자에 대한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상담 및 요양지도 등 근로자 건강보호 사후 조치 실시 여부 평가

+ 판단기준

실시율(%) = (사후지도를 실시한 근로자 수 ÷ 대상 근로자 수) × 100

★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결과 유소견자(D), 요관찰자(C) 발생사업장 5개소 이상 선정

※ 단,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업무적합성평가) 결과 **"다", "라"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 우선 선정**

※ 단,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대상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 선정된 사업장 당 사후관리 대상자를 최소 1인(최대 5인) 이상 선정

※ 총 대상자수 : 최소 5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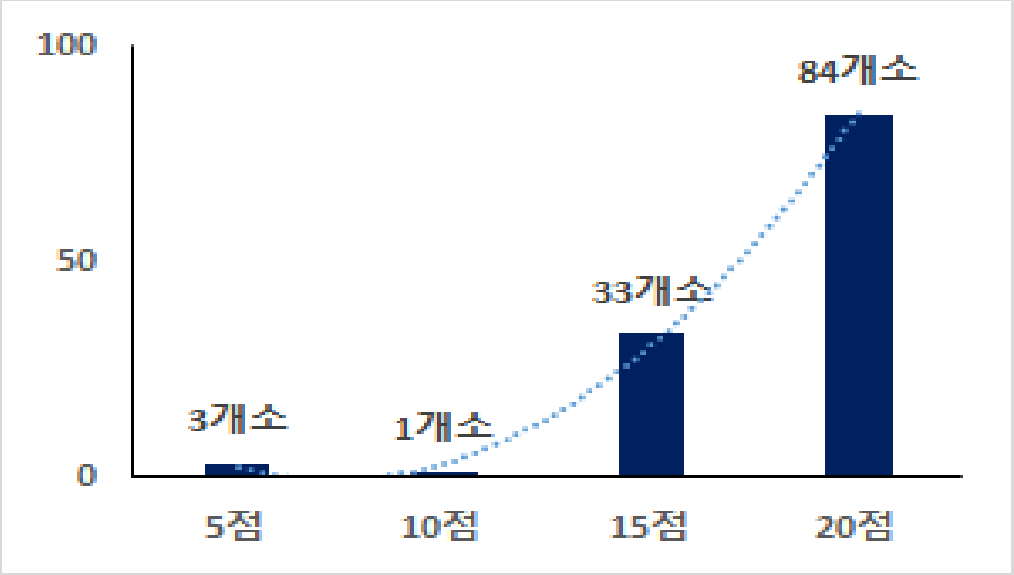

* 사업장 관리카드, 상태보고서, 상담일지, 진료의뢰서 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32.3점 → `22년 39.7점	
평가항목 B.1.1.3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11.9점	평가결과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의사)	①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 및 실질적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단, 실질적인 사후조치가 80% 이상인 경우는 27점, 60% 이상인 경우는 24점 부여)	□ 30 □ 27 □ 24
	②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사후조치 이행이 60% 미만인 경우	□ 20
	③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일부 누락	□ 10
	④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모두 누락	□ 0
평 가 취 지		

○ 산업보건의의 직무 중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실시 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유도

평가방법

○업무상질병 판정자에 대한 질병발생 원인 조사(작업환경, 근무방법 등)를 실시하고, 적절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지도 및 실시 여부를 평가

+ 판단기준

★ 평가대상기간 내 업무상질병자 발생, 질병 유소견자(D1, DN) 발생사업장 5개소 이상 선정

(단, 소음성난청, 진폐, 일반질병 유소견자(D2)는 제외)

- 야간작업 유소견자(DN)는 위장관계, 내분비계, 신경계 유소견자 보유사업장 우선 선정

※ 단,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대상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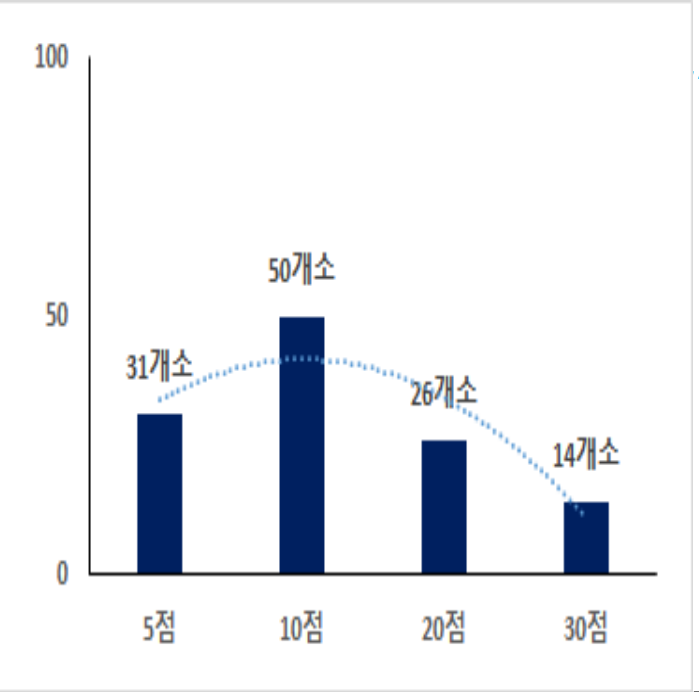

○ 실질적인 사후조치 : 평가기간 내 의학적 조치 지도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한 건이 입증되어야 함

○ 증빙서류 : 사업장 관리카드, 상태보고서, 건강상담일지, 진료의뢰서, 업무적합성평가 등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75.0점 → `22년 79.0점	
평가항목 B.1.1.4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5.8점	평가결과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참여율	① 위원회 참석을 80% 이상 수행한 경우	□ 20
	② 위원회 참석을 60% 이상 수행한 경우	□ 16
	③ 위원회 참석을 40% 이상 수행한 경우	□ 12
	④ 위원회 참석을 20% 이상 수행한 경우	□ 8
	⑤ 위원회 참석을 20% 미만 수행한 경우	□ 4
	⑥ 위원회 참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지도요원의 참석률 평가를 통한 예방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 유도

평가방법

○분기마다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여 수탁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활동 참여 여부를 평가

+ 판단기준

참여율(%) =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사업장 수÷선정된 사업장 수)×100

★ 수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의사가 산안위에 참석한 사업장을 반드시 1개소 이상 포함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대상이 없는 경우 "평균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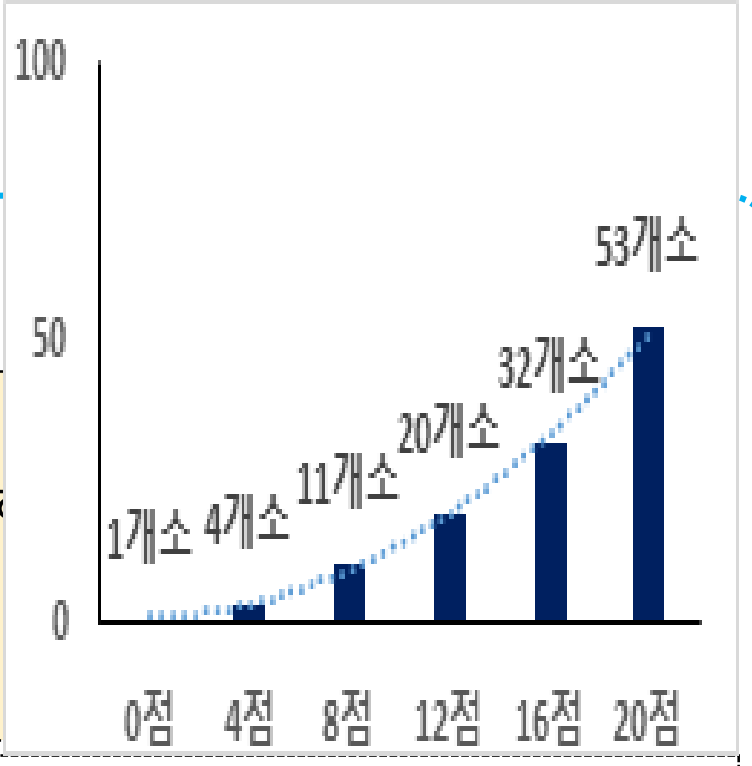

★ 의사의 산안위 참석사업장이 없는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서명 등 확인),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등으로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증빙할 때 인정**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75.0점 → `22년 77.0점	
평가항목 B.1.1.5	평가기준 (배점: 10) 평균득점: 7.7점	평가결과
보호구 착용 지도	① 보호구 착용 지도 및 실질적인 조치가 누락 없이 모두 실시된 경우	□ 10
	② 보호구 착용 지도가 100%인 경우	□ 8
	③ 보호구 착용 지도가 80% 이상인 경우	□ 5
	④ 보호구 착용 지도가 80% 미만인 경우	□ 3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실시 여부 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예방효과 거양 유도

평가방법

○ 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지도 및 보호구의 착용방법 등 기술지도 적정여부 평가

+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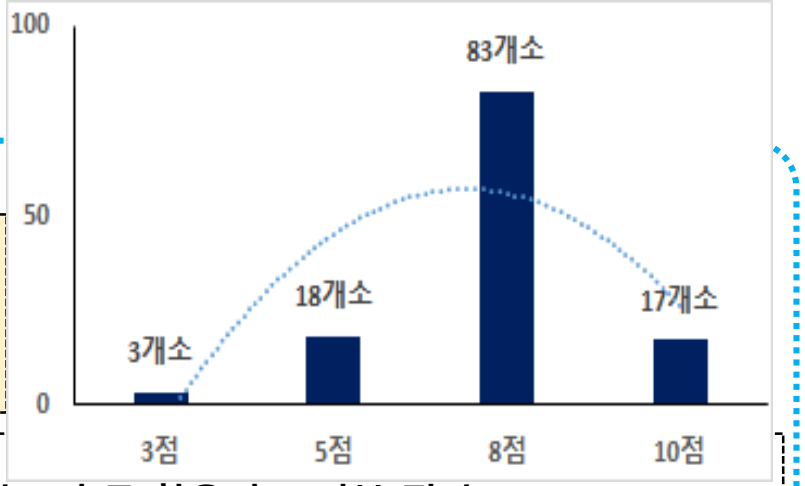

★ 화학물질 취급, 소음 및 분진작업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로 선정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보호구 착용지도 : 사업장 공정, 취급 화학물질 현황 등 파악 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및 보호구 착용지도 여부 평가

→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등에 공정/유해인자/발생형태 등의 구체적 언급 없이 '보호구 착용 지도'로 단순 기록된 것은 불인정

→ 피부자극성/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물질 및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인증품) 지도 누락 여부 확인

★ 실질적 조치

→ 밀착도검사 등 보호구착용 교육, 적격품 선정방법 교육등을 평가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실시 하거나 사업장의 보호구 적격품 구매 관련 서류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74.0점 → `22년 71.5점	
평가항목 B.1.1.6	평가기준 (배점: 40) 평균득점: 28.6점	평가결과
작업환경 개선지도	① 선정사업장 모두 개선의견 제시 및 실질적 개선이 이행된 경우 (단, 실질적 개선이 80% 이상인 경우 37점, 60% 이상인 경우 34점 부여)	□ 40 □ 37 □ 34
	② 선정사업장의 80%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30
	③ 선정사업장의 60%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20
	④ 선정사업장의 40% 이상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10
	⑤ 선정사업장의 40%미만 작업환경 개선의견 제시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거 수탁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여 업무상질병 예방효과 거양

평가방법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개선의견이 적절하고,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

+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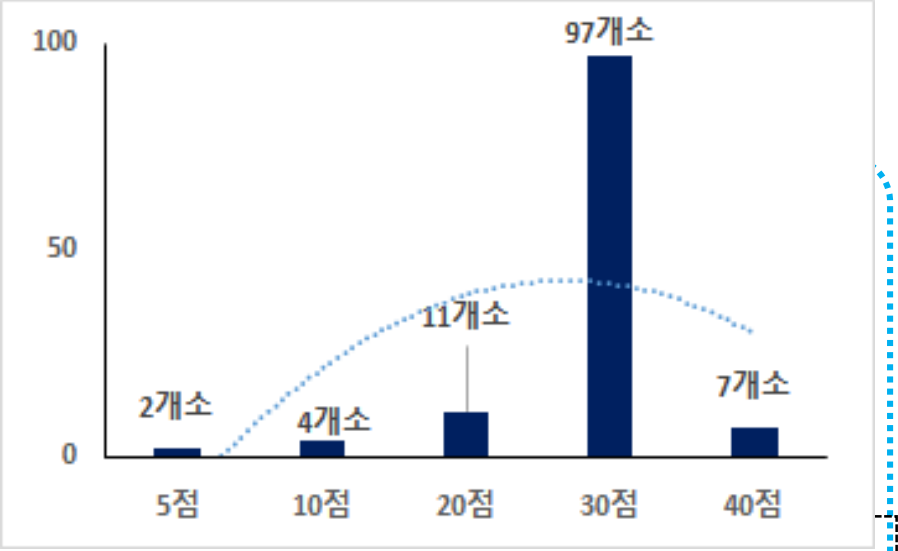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노출기준 초과(50% 이상 포함)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제시의견** : 환기장치 성능 및 개선방안, 화학물질의 저장 및 빈용기 관리 등

→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등에 공정/유해인자/문제점/대책 등의 구체적 언급 없이 기록된 내용은 불인정

★ **실질적 개선이행**

→ **평가기간 내 의견 제시 후 최소 1회 이상 실질적인 개선이 입증된 경우 실적 인정**

※ 측정 또는 검진결과, 안전검사결과에서 입증되어야 하고, 환기설비는 설비개선 사진(또는 관련 서류) 등 증빙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83.0점 → `22년 79.5점	
평가항목 B.1.1.7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5.9점	평가결과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① 순회점검 실시율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② 순회점검 실시율이 60% 이상인 경우	□ 16
	③ 순회점검 실시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④ 순회점검 실시율이 20% 이상인 경우	□ 8
	⑤ 순회점검 실시율이 20% 미만인 경우	□ 4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9호에 의거 수탁 사업장의 보건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등 작업장 순회점검 수행 수준을 평가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개선활동 유도

평가방법

○ 제조업 및 비제조업에 대한 **작업환경 순회점검 활동 실시율**을 평가

+ 판단기준

★ 제조업과 비제조업 각각 2개소 이상 무작위 추출하여 총 5개소 이상 선정

- 노출기준 초과(50% 이상 포함)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특정업종이 2개소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분야에서 추가선정

★ 순회점검 내용이 **상태보고서** 또는 **순회점검표** 등에서 확인되는 경

→ **순회점검표** 등 작성 시 **점검자 서명 등이 확인된 경우 실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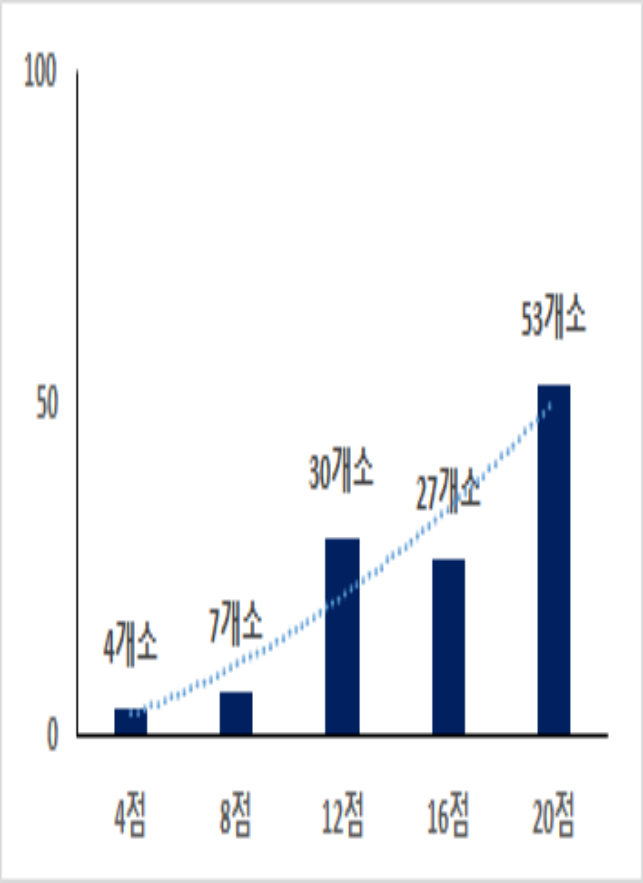

B.1.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배점: 190) `20년 60.0점 → `22년 61.5점		
평가항목 B1.1.8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2.3점		평가결과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조언·지도	계획수립률	① 보건교육계획서를 8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10
		② 보건교육계획서를 6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8
		③ 보건교육계획서를 4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6
		④ 보건교육계획서를 20%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 4
		⑤ 보건교육계획서를 20% 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 2
		⑥ 보건교육계획서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0
	교육실시율	① 보건교육을 8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② 보건교육을 60% 이상 실시한 경우	□ 8
		③ 보건교육을 40% 이상 실시한 경우	□ 6
		④ 보건교육을 20% 이상 실시한 경우	□ 4
		⑤ 보건교육을 20% 미만 실시한 경우	□ 2
		⑥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 0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의한 산업보건교육 직접 수행을 통한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인식 제고

평가방법

○ **보건교육계획 수립률**과 보건교육 **실시율**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합산

+ 판단기준

★ 임의로 5개소 이상 수탁사업장을 선정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육계획서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태보고서에 **지도·조언**한 사실만 있고, **교육계획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2점"**

→ 계획서 포함 **내용(교육종류 및 대상, 교육과정, 근로자 현황 등)이 미흡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보건교육 실시】

"1시간 단위 * 1회" 교육실시 여부를 평가

○ 수탁사업장당 총 1회(1시간을 기본단위(휴게시간 10분 포함)로 "1회 " 계산)

- 동일사업장에 **2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어도 "1회 "** 로 계산
- 교육시간이 50분 미만인 경우,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 이상이면 "1회 " 로 인정
- **전체근로자 중 80% 이상 참여 시 "1회 " 로 인정**

→ **교육일시/장소/강사(요원)/내용 등이 기재되지 않은 교육일지는 실적 불인정**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결과분석
계획수립율	**보건교육계획서 8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75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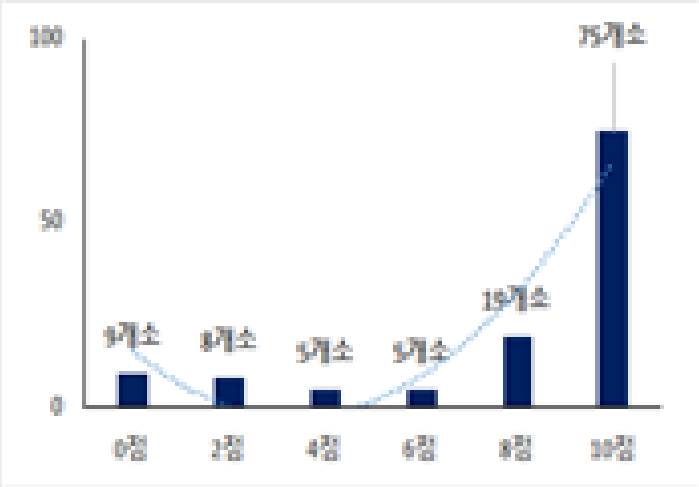
	보건교육계획서 6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19 (15.7%)	
	보건교육계획서 4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5 (4.1%)	
	보건교육계획서 2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5 (4.1%)	
	보건교육계획서 20%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8 (6.6%)	
	보건교육계획서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9 (7.4%)	
교육실시율	보건교육율 80%이상 실시한 경우	20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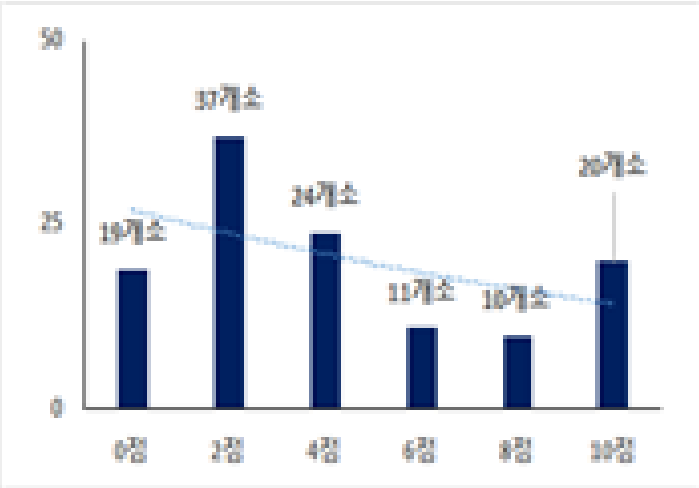
	보건교육을 60%이상 실시한 경우	10 (8.3%)	
	보건교육을 40%이상 실시한 경우	11 (9.1%)	
	보건교육을 20%이상 실시한 경우	24 (19.8%)	
	보건교육을 20%미만 실시한 경우	**37 (30.6%)**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19 (15.7%)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69.7점 → `22년 74.0점	
평가항목 B.12.1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2.2점	평가결과
물질별 MSDS 관리,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모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지도하고, 그 중 80% 이상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30
	② 모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지도한 경우	□ 20
	③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평가대상사업장의 80% 이상 지도한 경우	□ 10
	④ 공정별 사용물질 확인, MSDS 관리, 게시 비치 및 경고 표시 부착 등을 평가대상사업장의 80% 미만 지도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공정별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적정 MSDS관리, 게시, 경고표시 부착 등을 지도하고 교육을 통하여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인지도 향상 유도

평가방법

○ **MSDS 게시 · 비치** 및 소분용기 경고표시 부착 등 사업장 내 **MSDS 제도 이행에 대한 지도**내용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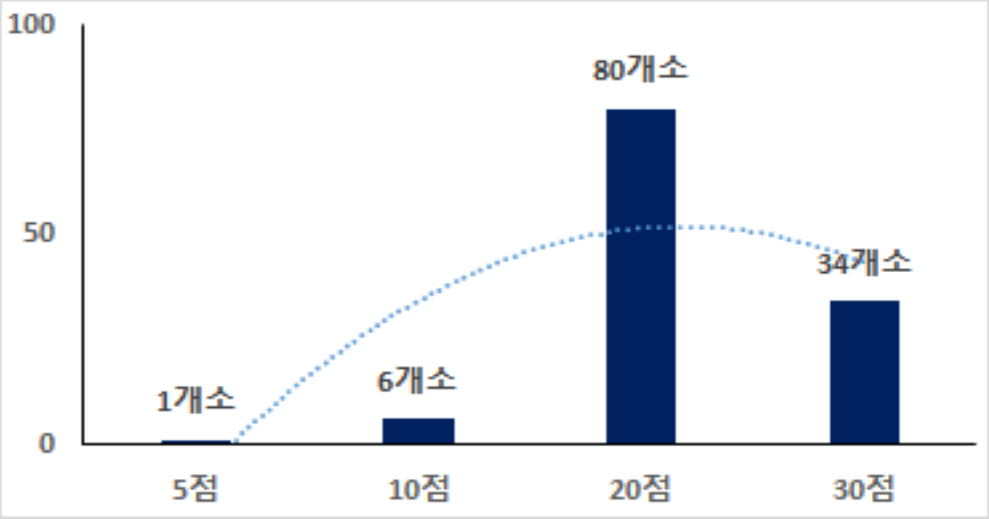

+ 판단기준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MSDS 지도** : 공정별로 취급 화학물질 파악, MSDS 게시 및 경고표시의 부착 등의 지도 내용 적정성 확인

→ **공정별 취급물질명 및 MSDS 관리 현황, 지도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기록된 내용은 불인정**

★ **실질적 조치**

→ 지도 후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진 경우로 **상태보고서, 작업장 순회점검표** 또는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비점: 200) `20년 81.5점 → `22년 87.0점	
평가항목 B.122	평가기준 (비점: 20) 평균득점: 17.4점	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하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20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률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의 실행력 제고

평가방법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의 적정성 및 실제 이행률 평가**

+ 판단기준

★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또는 위험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인 경우 우선 선정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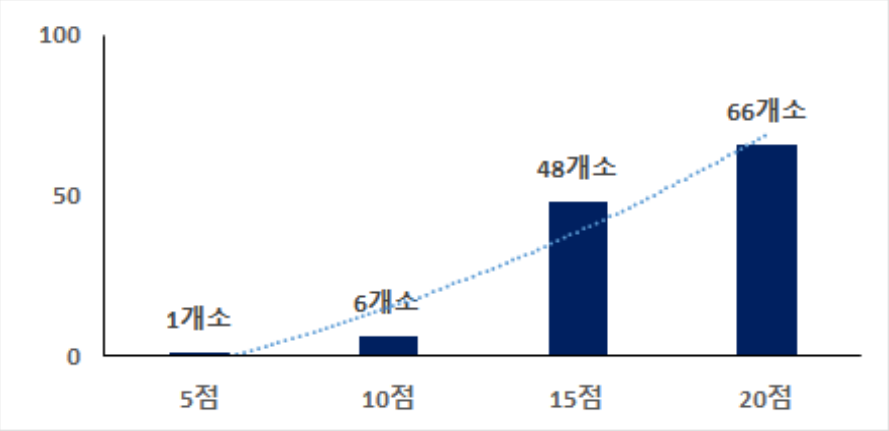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지도 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실제 실시한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작업장 순회점검표 또는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 되어야 함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68.5점 → `22년 65.5점	
평가항목 B.12.3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3.1점	평가결과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①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단, 실제 실시가 60% 이상인 경우 17점 부여)	□ 20 □ 17
	②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체계적인 건강증진운동 지도를 통한 사내 근로자 건강 보호·증진 활동 활성화 유도

평가방법

○ 금연, 절주, 비만, 영양, 운동관리 등 **근로자 건강보호 · 증진활동 프로그램** 지도 내용의 적정성 평가

+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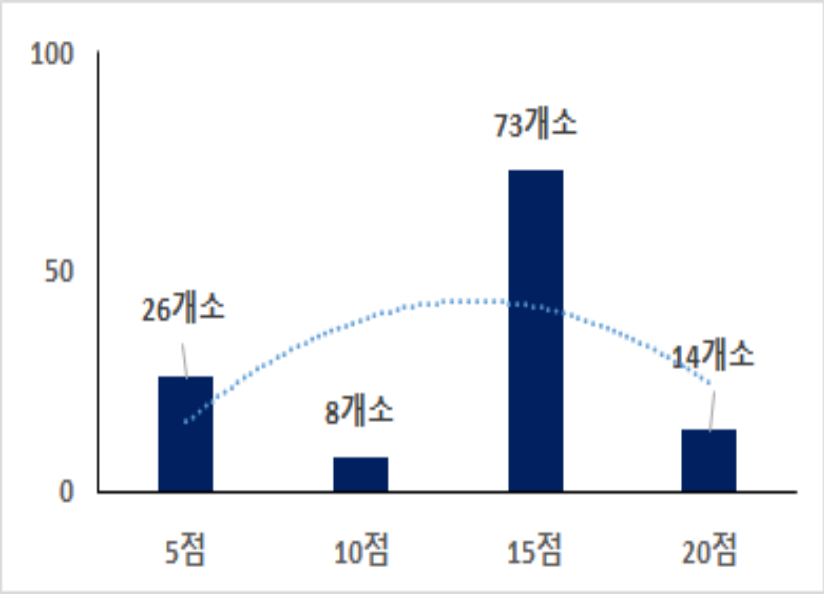

★ 수탁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임의 선정

○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 내용의 적정성 확인**

○ 평가기준의 **"실제 실시한 경우"**란 근로자 건강보호·증진 활동 프로그램 지도(추진팀, 추진절차, 시행 및 평가 등) 후 실제 실시한 경우로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계획 수립, 결과 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함**(실행율 80%이상)**

* KOSHA-Guide H-162-2014(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를 활용하여 작성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67.3점 → `22년 70.7점	
평가항목 B.1.2.4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1.2점	평가결과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①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에 누락이 없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30
	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③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를 통한 예방효과 거양

평가방법

○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및 심리상담 등 조치내용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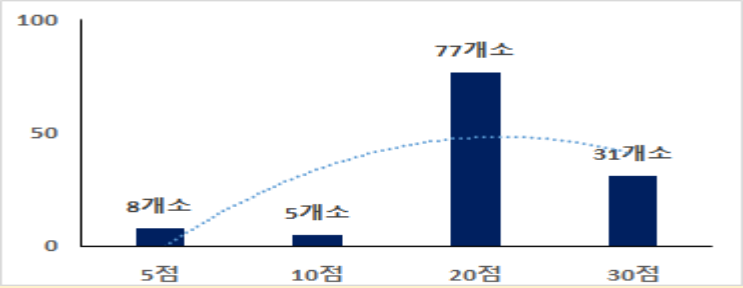

+ 판단기준

★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장시간근로, 전업 차량운전, 정밀작업 등)**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 등 **지도 내용의 적정성 확인**

※ 직무스트레스 "평가" 지도는 KOSS(한국인직무스트레스평가도구), 사회심리적지수, 감정노동평가지수 등 스트레스관련 지표 및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등 관련 활동은 폭넓게 모두 인정

○ **"실제 실시한 경우"란**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후 **직무스트레스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설문, 분석)** 및 개선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 설문평가 실시 후 **결과 분석과 개선조치가 누락된 경우**, "실제 실시한 경우"의 **실적 불인정**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79.5점 → `22년 85.0점	
평가항목 B.1.2.5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7.0점	평가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지도	①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 이상 실제 실시한 경우	□ 20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예방효과 거양

평가방법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지도하고 사후관리 실시 내용의 적정성 평가**

+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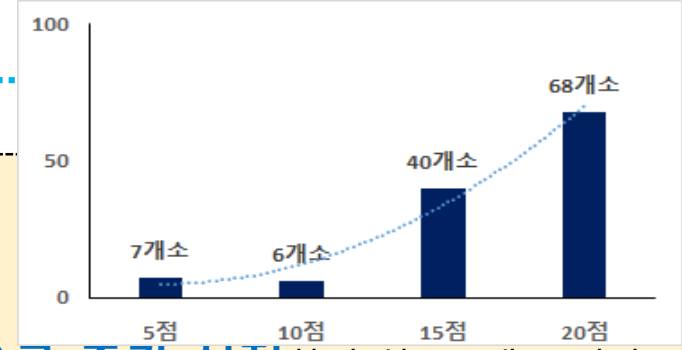

★ **내분비계, 순환기계 기초질환자***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유소견자(D) 또는 요관찰자(C) 판정자**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장년근로자(만50세 이상) 다수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최종 5개소 평가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뇌심 발병위험도 평가를 지도하고 사후관리 실시 내용의 적정성 평가**

○ **"실제 실시한 경우"**란 뇌심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지도 후 **발병위험도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기타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및 기타 평가도구를 폭넓게 인정**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79.7점 → `22년 80.3점	
평가항목 B.1.2.6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4.1점	평가결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지도	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 이상을 실제 작성한 경우	□ 30
	②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③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 이상인 경우	□ 10
	④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지도를 통한 질식재해 예방 효과 거양

평가방법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작성 지도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내용 평가**

+ 판단기준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단, 대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평가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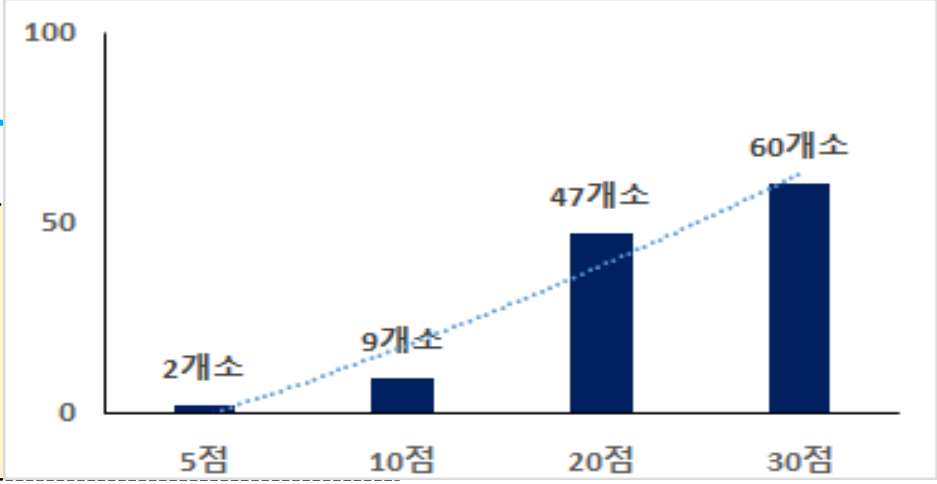

○ **밀폐공간 질식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등 지도내용이 상태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함

※ 단순 양식 등의 제공은 인정되지 않음

○ **"실제 작성된 경우"**란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작성 지도 후 상태보고서 및 문서로 작성이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80-2021(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활용하여 작성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67.0점 → `22년 73.7점	
평가항목 B.1.2.7	평가기준 (배점: 30) 평균득점: 22.1점	평가결과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	①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지도를 누락 없이 실시하고 그 중 80% 이상을 실제 작성된 경우	□ 30
	②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20
	③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지도를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 효과 거양

평가방법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지도** 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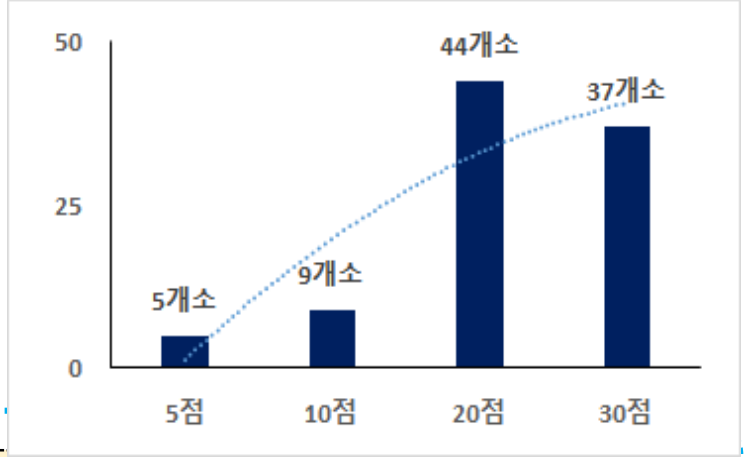

+ 판단기준

★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발생 사업장** 또는 기준규칙 **별표16에 의한 분진작업 해당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수립 · 시행사업장 우선 선정**

→ 평가 대상기간 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진으로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분진으로 유소견자(D1) 판정 또는 직업병발생자**

※ 해당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내용이 상태보고서에 기입**되어야 함.

- **지도내용 예시** : 환기장치, 유해성주지, 세척시설, 보호구 지급,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단,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의 경우 해당) 등

○ **"실제 작성된 경우"**란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작성** 지도 후 **상태보고서 및 문서로 작성이 확인**되어야 함

B.1.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배점: 200) `20년 92.5점 → `22년 92.0점	
평가항목 B.1.2.8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8.4점	평가결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지도	① 청력보존프로그램작성을 누락 없이 지도하고 그 중 80% 이상이 실제 작성한 경우	□ 20
	②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80% 이상인 경우	□ 15
	③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이상인 경우	□ 10
	④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실적이 60%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에 의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작성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한 소음성 난청 예방효과 거양

평가방법

○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지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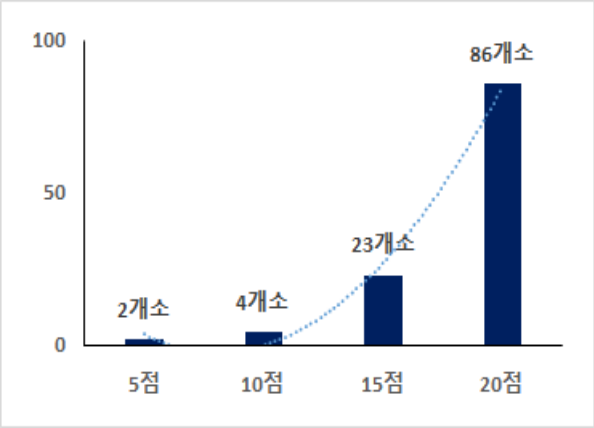

+ 판단기준

★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수준이 노출기준(90dB(A)) 초과** 또는 (특검결과) **소음으로 건강장해 발생(D1) 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평가

※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 적용

○ **청력보존프로그램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소음 측정과 평가, 소음제어 공학적 관리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작업관리, 보호구 지급 등**

○ **"실제 작성한 경우"**란 **청력보존 프로그램 작성지도 후 실제 작성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상태보고서 및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되어야 함

* KOSHA-Guide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지침)를 활용하여 작성

B.1.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배점: 50) `20년 59.6점 → `22년 73.2점	
평가항목 B.1.3	평가기준 (배점: 50) 평균득점: 36.6점	평가결과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①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3% 미만인 경우	□ 50
	②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6%미만인 경우	□ 40
	③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9% 미만인 경우	□ 30
	④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12% 미만인 경우	□ 20
	⑤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직업건강분야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수탁사업장의 12% 이상인 경우	□ 10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률 제고

평가방법

사전평가

○ 평가대상기간 **산업안전보건법 및 보건기준규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수탁사업장에 대한 점유율로 평가

+ 판단기준

○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수탁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로서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평가대상기간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건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수탁사업장에 대한 점유율로 평가

(3%미만 만점)

과태료 부과 사업장 점유율(%)

= (과태료 부과 사업장수 ÷ 전체 수탁 사업장수)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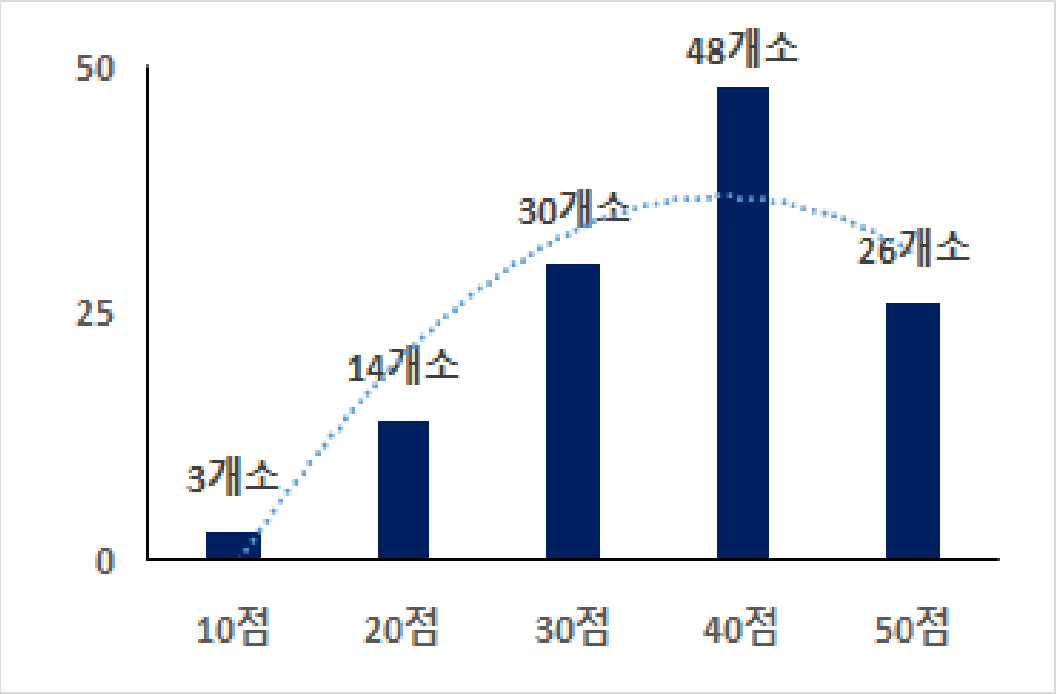

B.1.4	위험성 평가 신청 및 인정률 (배점: 40) 20년 62.3점 → `22년 32.0점		
평가항목 B.1.4	평가기준 (배점: 40) 평균득점: 12.8점		평가결과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및 인정률	신청율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 이상인 경우	□ 2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3% 이상인 경우	□ 15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 이상 인 경우	□ 1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 미만인 경우	□ 5
	인정율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3% 이상인 경우	□ 2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 이상인 경우	□ 15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 이상인 경우	□ 10
		수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 미만인 경우	□ 5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한 위험성평가 이행률 제고

평가방법

사전평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사업장 비율(**신청율**) 및 인정된 사업장 비율(**인정율**)을 합산하여 평가

+ 판단기준

★ **근로자수 100인 미만 수탁사업장(건설은 120억, 토목은 150억 미만) 전수**

※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 위험성평가(신청 또는 인정) 사업장수 산정은 **평가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인정**된 사업장만 인정

○ **신청사업장**은 KRAS 신청 후 **민원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평가(**신청율 20->5% 이상 만점)**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취소한 건은 신청 사업장수 실적 제외

○ **인정사업장**은 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 결정통지 날짜 기준**임(**인정율 10->3%이상 만점)**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결과분석
신청률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20%이상인 경우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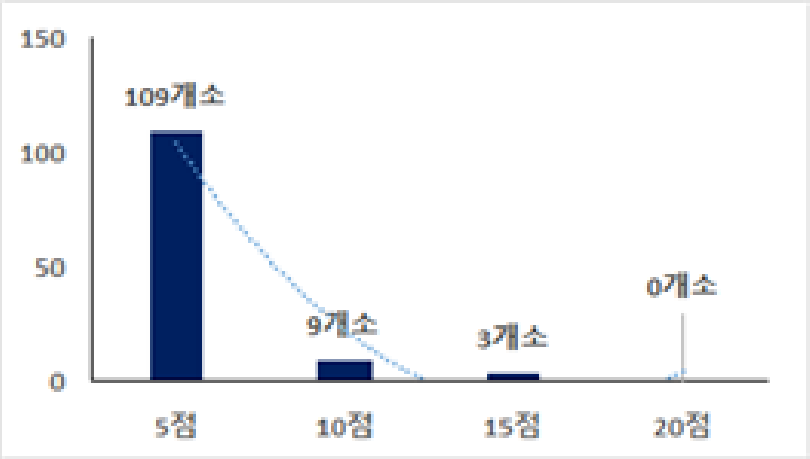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10%이상인 경우	3 (2.5%)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이상인 경우	9 (7.4%)	
	위험성평가 신청률이 5%미만인 경우	**109 (90.1%)**	
인정률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10%이상인 경우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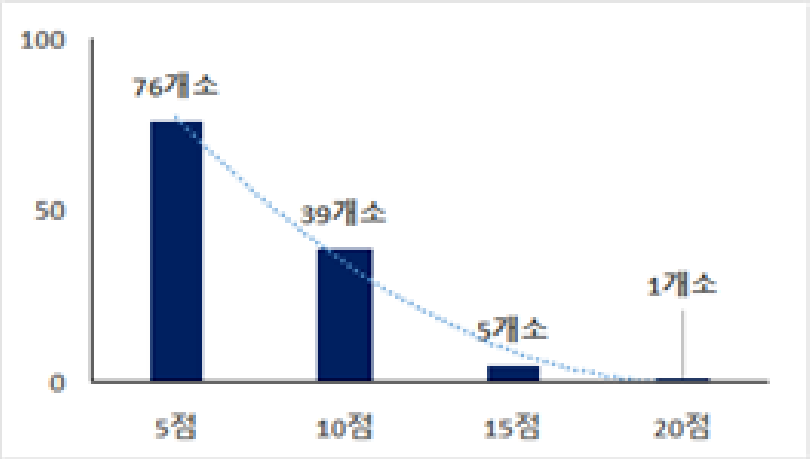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5%이상인 경우	5 (4.1%)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이상인 경우	39 (32.2%)	
	위험성평가 인정률이 2%미만인 경우	**76 (62.8%)**	

B.1.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감점: -30점) [신설]	
평가항목 B.1.5	평가기준 (감점: 최대 -30점) 평균득점: -2.7점	평가결과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 5 점) [최대 -3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특성을 반영한 기술지도 및 개선 노력도를 평가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의 K2B 입력현황 기준으로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평가

+ 판단기준

★ 평가년도 수탁사업장 중 최소 2개소 선정

<우선 선정>

- 최근 1년 이내 **업무상 질병 발생사업장**(평가대상기간 공단 재해통계 발생기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초과사업장 우선 선정)
-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다수 보유사업장

○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선정된 사업장의 공정, 설비 등을 파악하고 **주요 업무상 질병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내용의 충실성 및 개선 노력도를 평가**

평가기준 (감점: 최대 -30점)	평가결과
미흡한 기술지도 건수 x (- 5 점) [최대 -30점]	_____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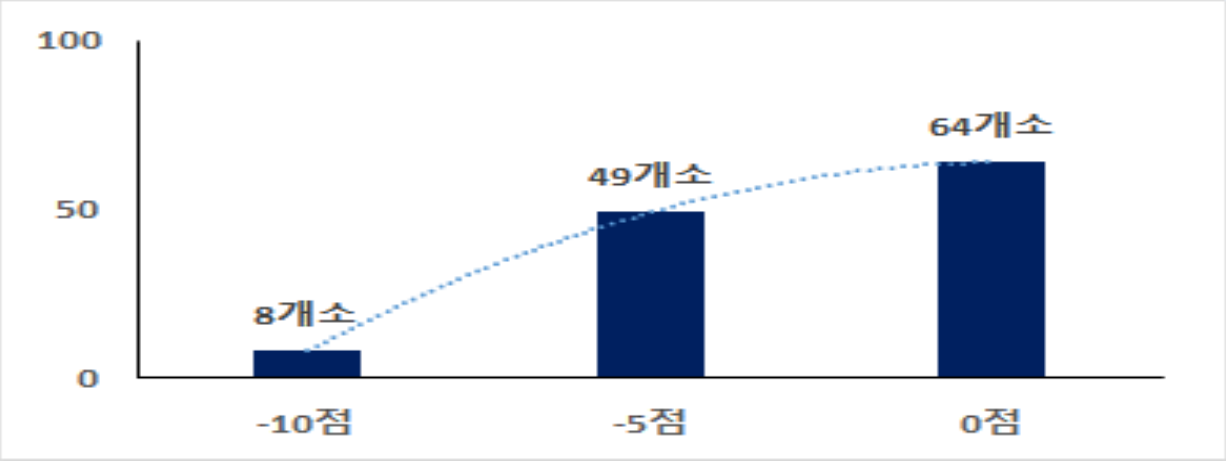

B-2항목
재해감소
(업무상질병 재해율/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B.2.1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배점: 50) `20년 47.6점 → `22년 48.6점		
평가항목 B.2.1	평가기준 (배점: 50) 평균득점: 24.3점		평가결과
업무상 질병 재해율 감소 성과	'21년 대비 '22년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율이	① 10% 이상인 경우	□ 50
		② 7%이상 10%미만	□ 40
		③ 4%이상 7%미만	□ 30
		④ 3%이하인 경우	□ 20
	⑤ '21년 대비 '22년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증가한 경우		□ 10
평 가 취 지			
○ 보건관리 지도 성과 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 수탁사업장의 21년 대비 22년 업무상질병 감소 수준 평가

+ 판단기준

★ 평가 직전년도 1년 간 지속 수탁한 사업장 전수

★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기준(감소율 10%이상인 경우 만점)

① 기준통계 : 정부 공식통계를 활용하되 공식통계 발표 이전에는 잠정통계 활용(산재요양승인일 기준)

② 산입대상 : **업무상질병(진폐, 소음성난청 제외), 밀폐공간 질식재해**

③ **사망자 가중치 : 이환자(부상자)의 10배(사망 1명 = 이환자 10명)**

④ **감소율(%)=(전년도 만인율-전전년도 만인율)÷전전년도 만인율)×100**

2022년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균점수(100점 환산) : '20년 47.6점 → '22년 48.6점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결과분석
'19년 대비 '20년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률과 '20년 대비 '21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 감소률 평균이	10% 이상인 경우	22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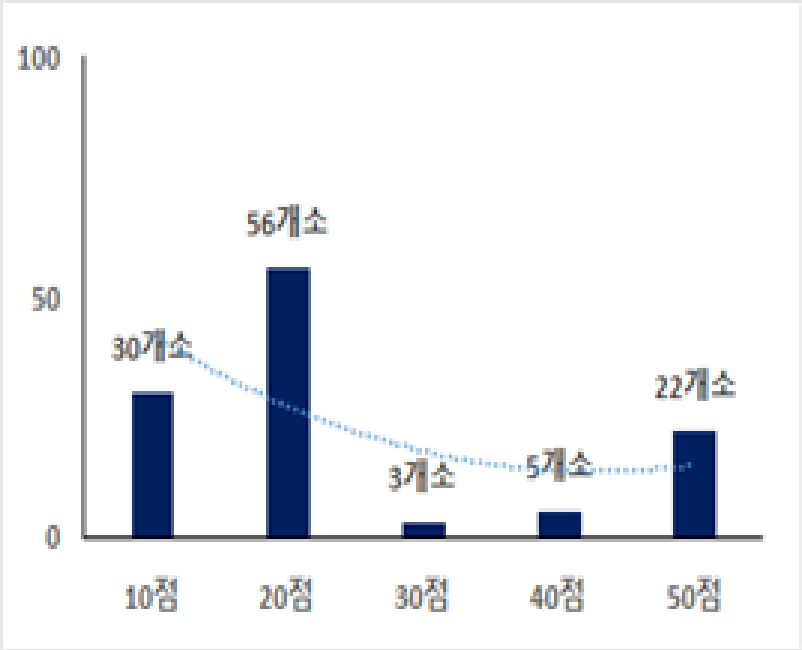
	5% 이상	5 (4.3%)	
	5% 미만인 경우	3 (2.6%)	
'19년 대비 '20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업무상질병 만인율이 감소한 경우		**56 (48.3%)**	
'19년 대비 '20년 및 '20년 대비 '21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이 모두 증가한 경우		30 (25.8%)	※ 평균 적용 사업장 5개소 제외

B.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배점: 20) `20년 83.0점 → `22년 80.0점	
평가항목 B.2.2	평가기준 (배점: 20) 평균득점: 16.0점	평가결과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①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80% 이상 실시한 경우	□ 20
	②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	□ 15
	③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2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④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20% 미만 실시한 경우	□ 5
평 가 취 지		

○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업의 올바른 건강증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평가방법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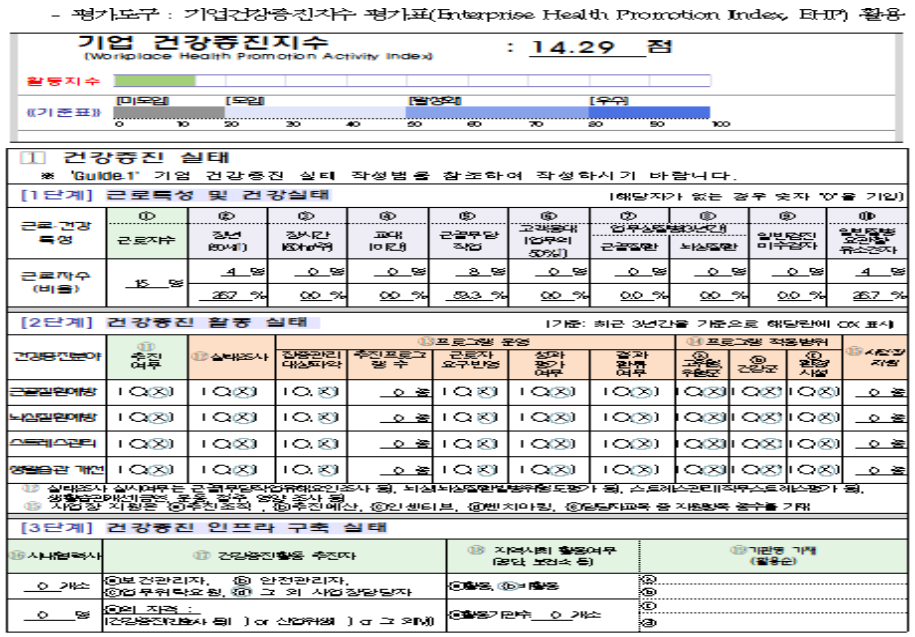
- 평가도구 :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표(Enterprise Health Promotion Index, EHP) 활용

기업 건강증진지수 (Workplace Health Promotion Activity Index) : 14.29 점

활동지수

(기준표) [미흡] [보통] [양호] [우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건강증진 실태

※ 'Guide.1' 기업 건강증진 실태 작성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근로특성 및 건강실태 (해당자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기입)

근로 건강 특성	① 근로자수	② 장년(60세)	③ 장시간(60h/주)	④ 교대(야근)	⑤ 근골무담 작업	⑥ 고객응대(업무의 50%↑)	⑦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질환	⑧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질환	⑨ 일반질진 미수검자	⑩ 일반질병 조기발견 유소견자
근로자수 (비율)	15 명	4 명	0 명	0 명	8 명	0 명	0 명	0 명	0 명	4 명
		26.7 %	0.0 %	0.0 %	53.3 %	0.0 %	0.0 %	0.0 %	0.0 %	26.7 %

[2단계] 건강증진 활동 실태 (기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당란에 OX 표시)

건강증진분야	⑪ 추진 여부	⑫ 실태조사	⑬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대상파악	추진프로그램 수	근로자 요구반영	성과 평가 여부	결과 활용 여부	⑭ 프로그램 적용범위: ⑤ 고위험 우선운영	⑥ 전직군	⑦ 현장 시행	⑮ 사업장 자율
근골질환예방	I O(X)	I O(X)	I O(X)	0 개	I O(X)	I O(X)	I O(X)	I O(X)	I O(X)	I O(X)	0 개
뇌심질환예방	I O(X)	I O(X)	I O(X)	0 개	I O(X)	I O(X)	I O(X)	I O(X)	I O(X)	I O(X)	0 개
스트레스관리	I O(X)	I O(X)	I O(X)	0 개	I O(X)	I O(X)	I O(X)	I O(X)	I O(X)	I O(X)	0 개
생활습관 개선	I O(X)	I O(X)	I O(X)	0 개	I O(X)	I O(X)	I O(X)	I O(X)	I O(X)	I O(X)	0 개

⑫ 실태조사 실시여부는 근골무담작업(유해요인조사 등), 뇌심혈관질환위험도평가 등, 스트레스관리(직무스트레스평가 등), 생활습관개선(금연, 운동, 영양 조사 등)

⑮ 사업장 지원은 ⓐ추진조직, ⓑ추진예산, ⓒ인센티브, ⓓ벤치마킹, ⓔ담당자교육 등 자율형태 중 수를 기재

[3단계]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실태

⑯ 사내협력사	⑰ 건강증진활동 추진자	⑱ 지역사회 활용여부 (공단 보건소 등)	⑲ 기관명 기재 (활용 시)
0 개소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 ⓒ업무위탁요원, ⓓ 그 외 사업장담당자	ⓐ활용, ⓑ미활용	① ②
0 명	ⓔ외 자격 : (건강증진지표사 등)) or 산업위생) or 그 외(N)	ⓐ활용기관수 0 개소	③

○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지도(**노동자의 근로형태·건강특성 파악, 건강 잠재적 위험도, 건강 증진활동 요구도, 추진수준 평가결과, 활동수준, 우수지원 분야 등 명시)** 및 **사후관리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

+ 판단기준

★ **수탁한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해당 사업장의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시 적정**

○ **증빙서류 : 상태보고서,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결과, 기업건강지수 보급관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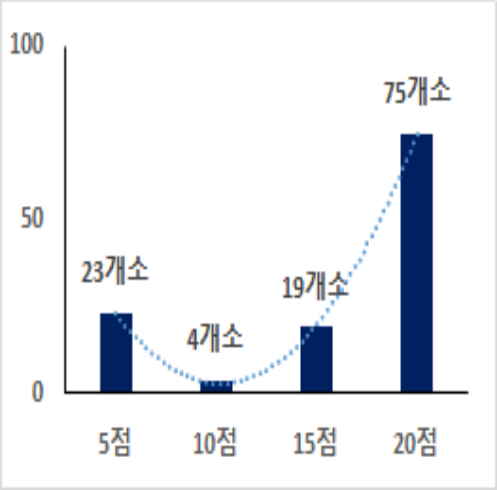

B-3항목
만족도 및 우수사례
(지도사업장 만족도/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노력도)

B.3.1	지도사업장 만족도 (배점: 40) `20년 97.8점 → `22년 90.3점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 (배점: 40) 평균득점: 36.1점	평가결과
지도사업장 만족도	① 평가점수 합계 90점 이상	□ 40
	②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 30
	③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	□ 20
	④ 평가점수 합계 60점 이상	□ 10
	⑤ 평가점수 합계 60점 미만	□ 5
평 가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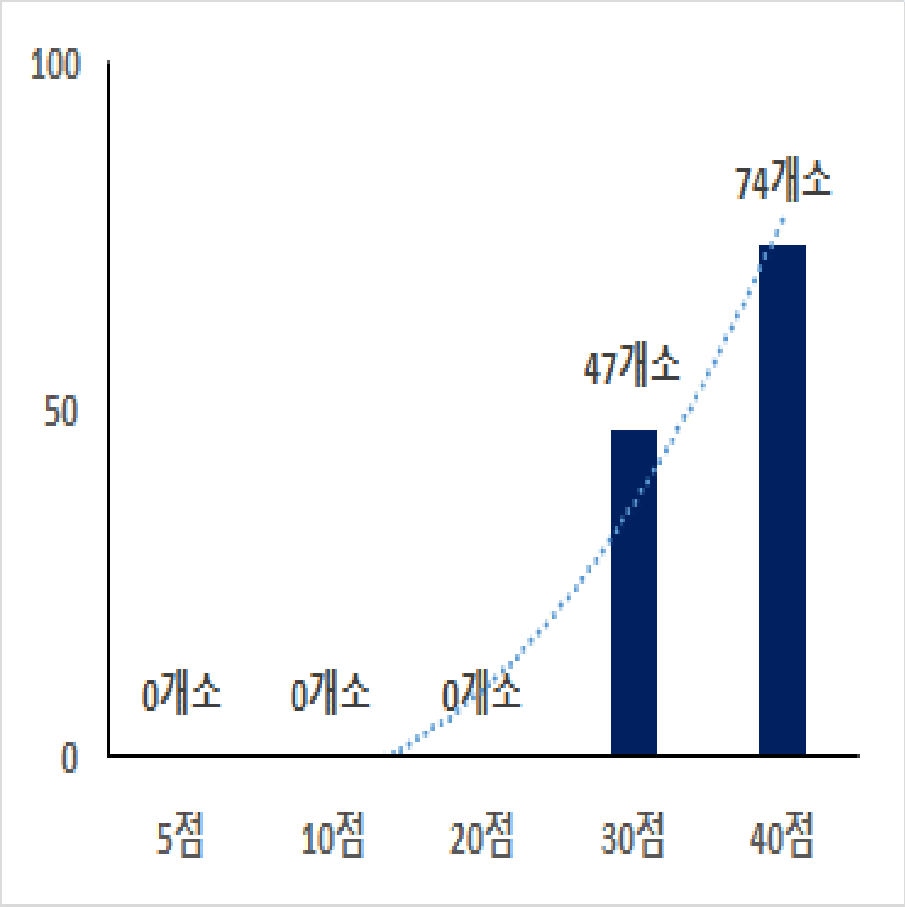

○ 지도사업장 만족도 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 공단 직접조사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지도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 판단기준

★ 평가대상기간 지도사업장 30개소 무작위 선정

(30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공단 직접조사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지도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설문지는 5개 문항으로 20점 만점에 5점 척도로 구성

※ 설문 문항 :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준비, 현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여부, 보건지도인력의 적극성, 보건정보의 원활한 제공,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기여도

※ 응답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지표 평균점수" 적용

B.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배점: 10, 가점: 최대 +20점) `20년 3.8점 → `22년 3.8점	
평가항목 B.3.2	평가기준 (배점: 10) 평균득점: 3.8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
	② 우수사례 미제출	□ 0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여부 (가점: 최대 +20점)	
	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 +20
	②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15
	③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10
평 가 취 지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전반적인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

평가방법

○ 보건관리 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기관별 우수사례 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을 평가**

+ 판단기준

○ 평가대상기간 내에 우수사례 제출 여부, 서류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에 따라 평가

※ 발표대회에 "대상" 없이 "최우수상"이 가장 높은 상인 경우 가점 +20점 부여

서류 제출 여부 →

수상 여부 →

평가기준 (배점: 10)	평가결과
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
② 우수사례 미제출	□ 0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여부 (가점: 최대 +20점)	
①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 +20
②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15
③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10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결과분석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류를 제출한 경우	31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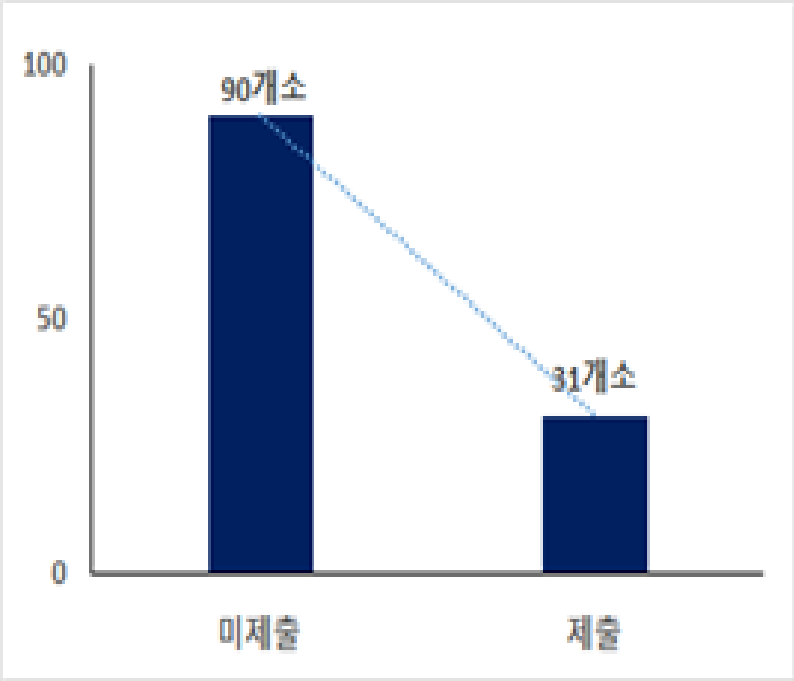
우수사례 미제출	**90 (74.4%)**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여부(가점:+20점)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3 (2.5%)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3 (2.5%)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5 (4.1%)**	

B-4항목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지도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산재은폐
/직업병사례 및 징후 신고)

B.4.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감점: 최대 -100점) `20년 -3.1점 → `22년 –4.8점	
평가항목 B.4.1	평가기준 (감점: 최대 -100점) 평균득점: -4.8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업무상질병) 발생건수___건 × (-10)점 = _____점 중대재해(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발생건수 ___건 × (-50)점 = _____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여부 평가를 통한 보건관리 지도 내용의 현장 작동성 강화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 수탁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여부**에 대해 평가

○ **업무상질병** 및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2가지로 구분하여 계약기간 내 재해발생일 기준 적용

+ 판단기준

○ **평가대상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 중 업무상질병,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질식) 재해에 한함(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자 동시 2명 이상,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계약기간 내 재해발생일 기준 적용**

○ 중대재해 중 **업무상질병에 관한 재해는 발생 건수 1건당 10점, 질식재해는 1건당 50점, 최대 100점 감점**

평가기준 (감점: 최대 -100점)	평가결과
중대재해(업무상질병) 발생건수___건 × (-10)점 = _____점 중대재해(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발생건수 __건 × (-50)점 = _____점	_____ 점

2022년 평가결과

평가기준	평가결과(개소)
중대재해 발생 감점 -50점 이상인 경우	1 (0.8%)
중대재해 발생 감점 -40점 이상인 경우	2 (1.7%)
중대재해 발생 감점 -30점인 경우	1 (0.8%)
중대재해 발생 감점 -20점인 경우	4 (3.3%)
중대재해 발생 감점 -10점인 경우	34 (28.1%)
중대재해 발생 감점이 없는 경우	**79 (65.3%)**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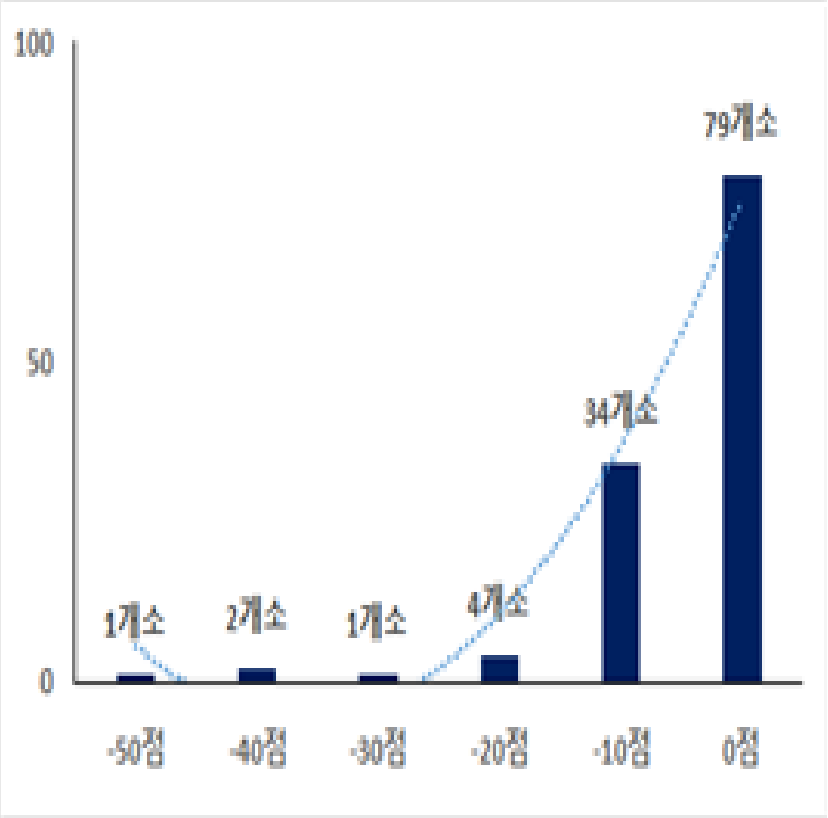

B.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감점: 최대 - 100점) `20년 -0.1점 → `22년 -0.2점	
평가항목 B.4.2	평가기준 (감점: 최대 - 100점) 평균득점: -0.2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산재은폐 처벌건수 _____건 × (- 10)점 = _____ 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수탁사업장의 보건분야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건수를 평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재예방 의식 고취 유도

평가방법

사전평가

+ 판단기준

○ 수탁사업장에서 **보건분야 산재은폐(미보고, 지연보고 포함)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한 평가

○ 보건분야 산재은폐로 처벌받은 건수 **1건당 10점** 감점, **최대 100점 감점**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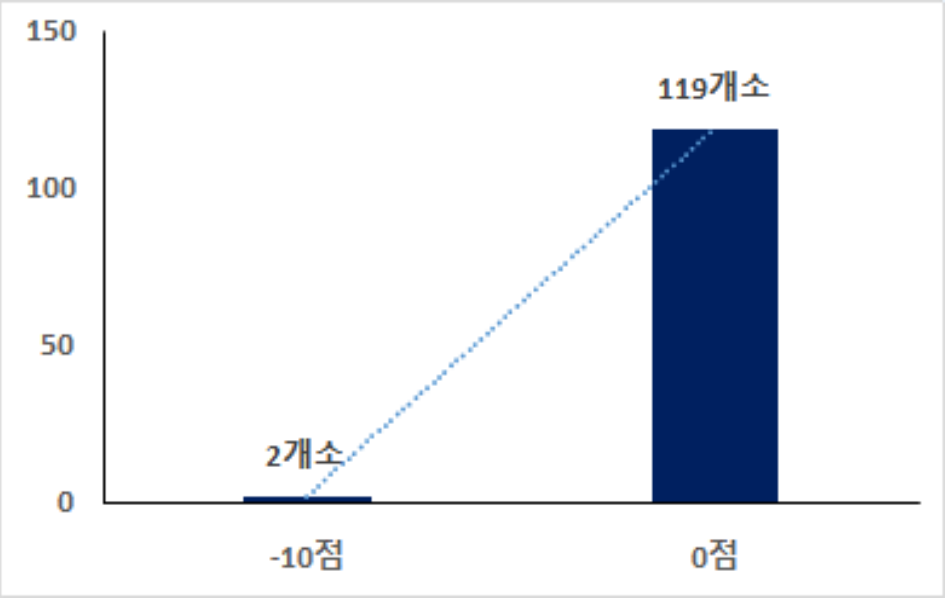

B.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가점: 최대 +100점) `20년 0.3점 → `22년 0점	
평가항목 B.4.3	평가기준 (가점: 최대 +100점) 평균득점: 0점	평가결과
수탁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건수 ___건 × 20점 = _____ 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 활성화를 통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초동대처 강화

평가방법

+ 판단기준

○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발생 시** 공단 일선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를 활용하여 **신고 및 대응한 사례**를 평가

○ 신고 건수 **1건당 20점** 가점, **최대 100점 가점**으로 평가

※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사전 미인지 사안에 대한 기관 신고 시 적용

소화약제 HCFC-123 독성간염(안성)

TCE 중독(광주)

메탄올 중독(부천)

삼산화안티몬 피부염(보성)